

—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2024. 12.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 정주연((사)다시입다연구소 / 대표)

연 구 원 : 김남연(사단법인 두루 / 변호사)

김보미(사단법인 선 / 변호사)

이승연((사)다시입다연구소 / 프로젝트매니저)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필요성	7
2. 재고의 개념	9
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관련 정의	9
나. 프랑스 법령상 재고의 정의	10
다. 국내법상 재고 정의에 대한 제안	1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I. 본론	15
1. 의류 재고 폐기의 실태 및 환경적 영향	17
2. 의류 재고 폐기 관련 해외 법제 및 정책 분석	21
가. 프랑스	21
나. 스페인	29
다. 스코틀랜드	38
라. 유럽연합	44
마. 독일 및 벨기에	59
바. 기타	80
III. 결론	95
• 참고문헌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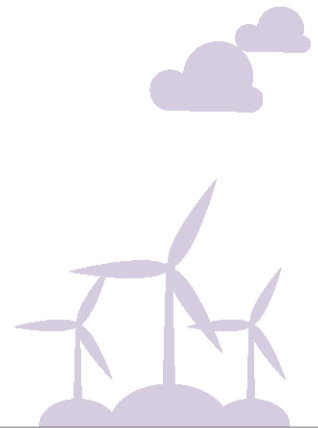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II-1〉 4가지 유형의 각국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제도	97
---	----

그림 목차

[그림 I-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영역 중 섬유패션산업 비중(2020년)	3
[그림 I-2] 2015년 글로벌 의류 직물 흐름	5
[그림 I-3] 2000년 이후 의류 판매 성장세와 의류 사용 감소세	6
[그림 II-1] 국내 매출 상위 7개 패션 기업 재고 상품 소각 여부 설문 조사	18
[그림 II-2] 주요 패션업체 재고자산 추이	19
[그림 II-3]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의류산업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그림 II-4] 2022년 유럽연합 가계 소비 의류 부문	59
[그림 II-5] 2000-2021 독일 섬유, 의류, 가죽 탄소 배출량	60
[그림 II-6] 2004-2022 독일 의류 섬유 폐기물량	61
[그림 II-7] 벨기에 플랑드르 섬유 폐기물량	77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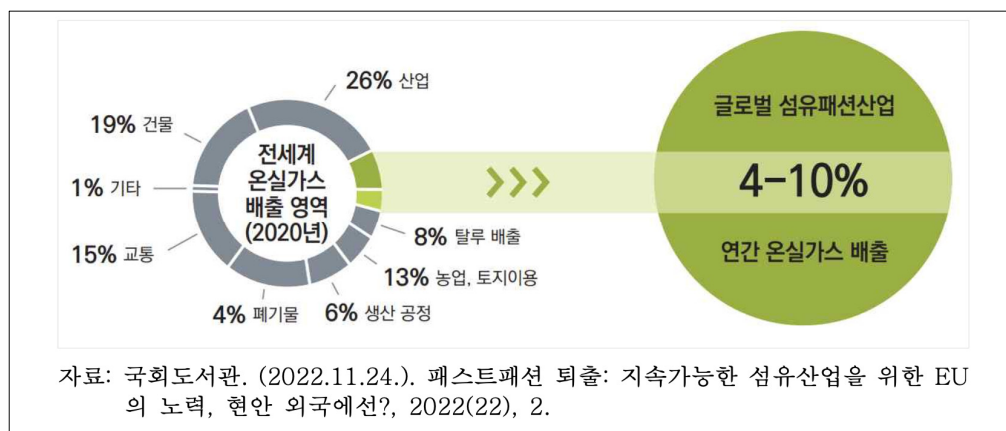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재고의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유행에 따라 빠르게 생산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옷을 우리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 부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델은 의류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의류산업을 전 세계 제2위 환경오염 산업으로 전락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00년 글로벌 섬유 생산량은 5,800만 톤이었으나 2022년엔 1억 1,600만 톤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이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1억 4,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그림 I-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영역 중 섬유패션산업 비중(2020년)

2019년 UN환경총회에서 출범한 UN 지속가능한 의류연합(UN Alliance for Sustainable Fashion)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는 의류 산업(의복, 신발, 가방 등 잡화를 포함. 이하 ‘의류 산업’이라 합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1) 텍스타일 익스체인지(2023), 2023 연간보고서

이외에도 전 세계 폐수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 35%의 발생원으로 지목되는 의류 산업은 환경 파괴 주범 산업으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의류 산업에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²⁾

의류 산업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원료의 97%는 석유, 목화 등 천연자원에서 나온다.³⁾ 천연 섬유를 대표하는 면, 즉, 목화는 밀과 쌀에 이어 세 번째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작물이고,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25%, 농약 사용량의 11%를 소비하여 재배되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작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⁴⁾ 합성 섬유는 석유, 석탄, 천연 가스 등의 원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섬유이다. 섬유이긴 하나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생분해되지 않는다.⁵⁾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합성 섬유의 문제는 유한한 화석 자원으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세탁할 때마다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어 자연과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⁶⁾

생산 단계에서 의류 산업의 문제점은 환경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의류를 생산하는 전 세계 약 9,400만 명의 근로자들 중 약 60%가 여성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80%에 달한다. 이들의 노동력은 보다 빨리, 보다 저렴하게 의류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지만, 사회 보장, 노동법 보장, 의료 또는 최저 임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 건강권 성평등 등 인권 침해의 문제를 겪는다⁷⁾ 또한, 전 세계적으로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노동 인구 1억 6천만 명 중 70%은 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면화는 최소 18개국에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가장 흔한 상품 중 하나인 바⁸⁾ 아동 노동의 문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 세계 항공과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8%. 의류 산업이 환경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앨런 맥아더 재단(2017), a new textiles economy)

3) 앨런 맥아더 재단(2017), a new textiles econom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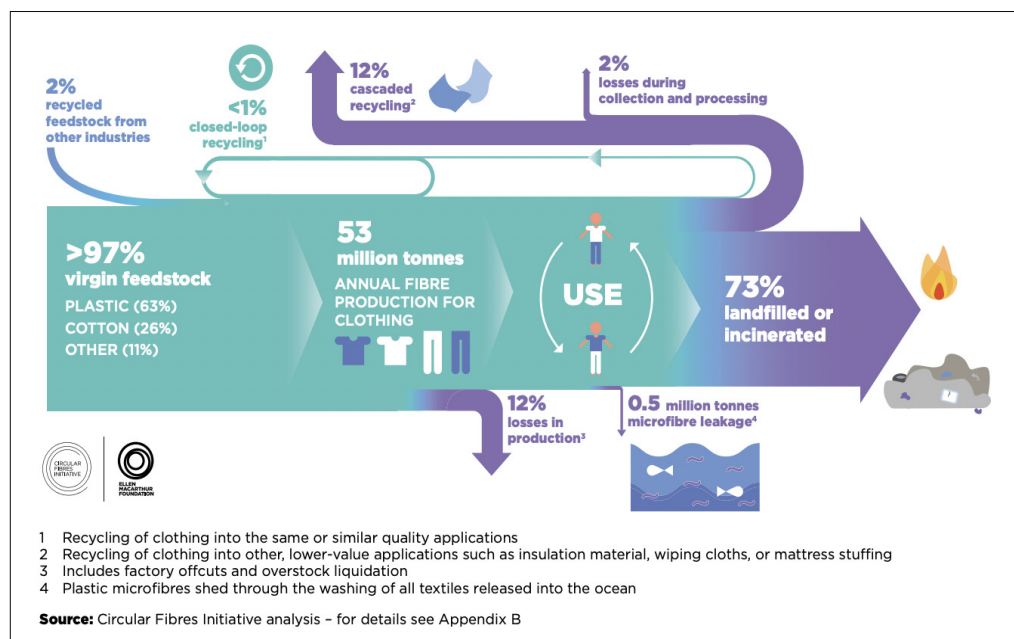
4)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8), Fashion and the SDGs : what role for the UN?

5) 앨런 맥아더 재단(2017), a new textiles economy

6)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의 35%가 합성섬유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원 중 1위를 차지한다. (Julien Boucher, Damien Friot, IUCN(2017), Primary Microplastics Global Evaluation of Sources in the Oceans)

7)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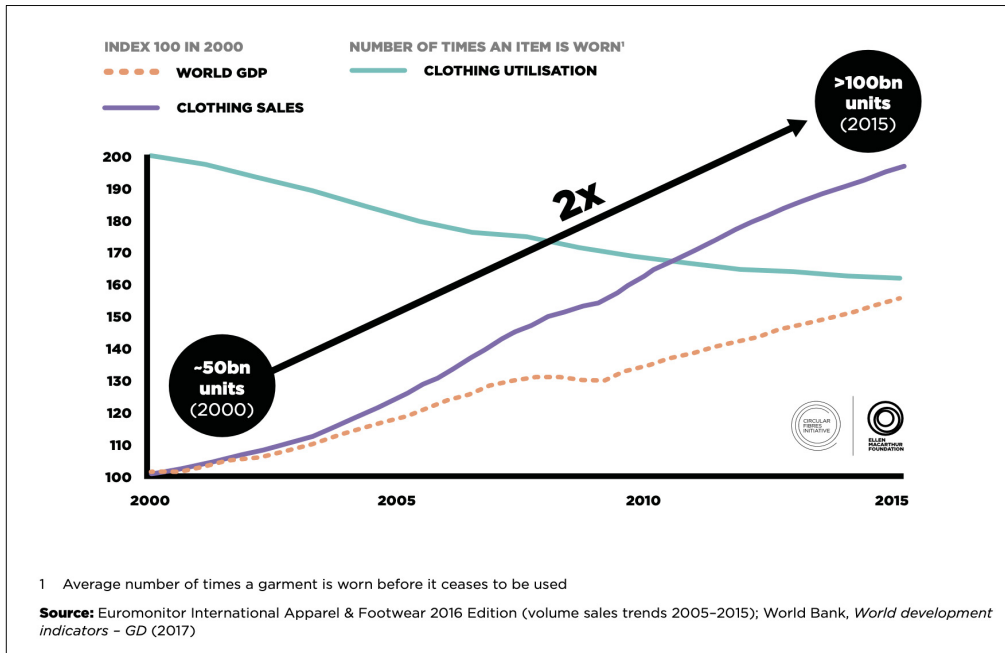
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2), Eliminating child labour and forced labour in the cotton, textile and garment value chains : An integrated approach



[그림 I-2] 2015년 글로벌 의류 식물 흐름

유럽, 미국, 대한민국 등 선진국의 의류 기업들은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의류, 가방, 신발 등 의류 제품들을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의류를 생산한다. 전 세계 의류 제품의 60%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고, 전 세계 모든 의류 근로자 중 75%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원료는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등 국가에서 채취하고 제품 생산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기에 항공과 해운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직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그림 I-3] 2000년 이후 의류 판매 성장세와 의류 사용 감소세

의류 산업에서 폐기 문제는 그 어떤 산업보다 심각하다. 의류 산업 전체의 재활용률은 1% 미만이다⁹⁾. 유행에 따라 저품질로 저렴하게 만들어져 몇 번만 입고 버려지는 옷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해서 전 세계에 1000억 벌의 옷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중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사라지고 있고, 이는, 매초 2.6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¹⁰⁾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인은 한 옷당 7번만 입고 처분한다.¹¹⁾

이렇게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류 산업에서 2018년부터 급격히 대두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팔리지 않은 제품들을 폐기하는 ‘낭비’ 문제이다. 빠른 유행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의류는 다른 제조물과 비교하여 더 많은 재고나 반품 상품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9) 앨런 맥아더 재단(2017), A new textile economy : Redegning fashion's future

10) 앨런 맥아더 재단(2017), A new textile economy : Redegning fashion's future

11) 월스트리트저널(2019.08.29), The High Price of Fast Fashion

2017년 언론을 통해 영국의 고급 의류 브랜드 버버리가 팔리지 않은 옷과 액세서리 등 2,860만 파운드(약 5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폐기했고, 그 전 5년간 폐기한 제품의 총 가치가 9,000만 파운드(약 1,619억 원)가 넘는다는 사실¹²⁾이 알려지면서 의류 기업들의 ‘재고 폐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의류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사회와 정부, 산업계는 활발한 논의를 하였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연합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재고 폐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연구의 필요성

제조물 생산자의 판매량 예측과 실제 소비자의 구매량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필연적으로 모든 제조물 판매기업의 사업활동에서는 재고가 발생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상 판매량을 철저히 예측하여 재고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미판매 재고는 소진할 때까지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많은 경우 재고를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과 재고 자산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폐기하고 있다. 재고를 판매, 재사용,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폐기할 경우 자원의 낭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 I. 1.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과 여러 환경 오염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다른 제조물과 비교하여 생산량 대비 재고 발생률이 높으며,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시민들이 재고 폐기의 문제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연구진은 제조물의 재고 폐기 문제 중 의류 재고에 집중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류 산업은 원료의 채취와 의류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자원이 투입되고,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류의 생산량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넋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법 제도를 통해 의류 재고의 폐기를

12) BBC(2018), 버버리,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방, 의류, 향수 불태워

전면 금지하거나 의류 재고를 폐기하지 않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 규제를 도입하면 의류 생산자는 재고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업자는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다. 즉, 의류 재고의 폐기를 규제하는 법 제도는 궁극적으로 의류 산업 전반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는 2020년 2월 10일에 법률 제2020-105호,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 이하 ‘AGEC 법’이라 합니다.)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류 폐기물 문제, 특히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재고 폐기 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및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 등 국가에서는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재고 관리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의류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고, 그 진행 과정과 성과 또한 상이하다. 때문에,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의류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외국의 법과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규제의 도입 차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의류 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그 기초 자료로서, 향후 국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재고의 개념

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관련 정의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내 관련법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의류 재고에 대해 정의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폐기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장혜원 의원 등 10인이 의류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¹³⁾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이 개정법률안에서도 의류 재고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향후 의류 재고에 대한 관리와 폐기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율할 “의류 재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타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차용하고자 현행 국내법에서 “재고”에 관한 정의 규정부터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현행 법률(68개)¹⁴⁾, 대통령령(75개) 검색 결과 “재고”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재고 관련 규정을 둔 총 73개 총리령 및 부령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이 2개의 시행규칙에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나 설명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⁵⁾

13) 장혜원 의원 대표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86(2024. 5. 27.) [임기만료 폐기]

14) 법률에서 일부 참고할 만한 규정은 법인세법에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15)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11. 2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항 내지 제4항 생략]

나. 프랑스 법령상 재고의 정의

1) 미판매 제품(재고)의 정의

프랑스 생태전환청, 환경에너지관리청(L'Agen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ADEME¹⁶⁾) 은 미판매 비식품 제품에 대해 “전통적인 판매 채널(상점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없거나 내부 채널(계절 판매, 프로모션, 클리어런스 판매 등)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모든 새로운 비식품 제품”으로 정의한다.¹⁷⁾

16)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itrise de l'Energie의 약칭

17) 프랑스 경제재정부(2022.02.15.), 판매되지 않은 비식품 품목을 기부하세요. 기부 진행 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Donner vos invendus non alimentaires : comment ça marche?)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항 내지 제4항 생략]

2) 미판매 비식품 제품 관련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의류 재고인 미사용 의류는 관련 법령에서 미판매 비식품 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재사용 및 낭비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⁸⁾ 프랑스 AGECE 법이 시행되면서,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모두 이 미판매 제품들(판매되지 않은 비식품 제품)에 대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프랑스 환경법전은 “제품의 ‘생산자’와 관련해, 판매방식과 상관없이 최종 생산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에서 명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제조하거나 국내 시장에 최초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을 계약서의 상표 부착 조항에 따라 재판매업자나 주문자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이 재판매업자나 주문자는 생산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²⁰⁾를 모두 위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에 포함함으로써, 프랑스 환경법의

18) 국회법률도서관(2021. 6. 29. 개정문 번역), 프랑스 환경법전,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제10절 제품의 재사용 및 낭비방지대책 제10절의2 미판매 비식품류 제품 제D541-320조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19) 국회법률도서관(2021. 7. 16. 개정문 번역), 프랑스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제12절 섬유류 제품, 신발, 가정용 내의류 제품 및 가정용 새 섬유제품 제R543-214조 (21.7.16. 개정)(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국회법률도서관-데이터베이스-외국법률번역DB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병행 수입에 대한 정의규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프랑스 국내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국내법상 재고 정의에 대한 제안

국내 일부 회계 관련 시행규칙의 재고 자산의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해 수입 또는 병행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에 많이 유통되는 의류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사용 및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물품의 환경 훼손적인 임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 사례에서와 같이 생산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고에 관한 정의 조항을 제안한다.

제*조(정의)

- [*]. 이 법에서 말하는 “재고”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별도의 가공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 [*]. 이 법에서 말하는(또는 전 호에서 말하는) “생산자”라 함은 판매방식과 상관없이 최종 생산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에서 명시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내 시장에 최초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을 계약서의 상표 부착 조항에 따라 재판매업자나 주문자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이 재판매업자나 주문자는 생산자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외국의 법적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먼저, 본 연구는 의류 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의류 재고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기사, 도서,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폭넓게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의류 재고 폐기가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고 폐기는 탄소 배출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적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를 통해 의류 재고 폐기 문제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위원들은 법적 제도적 해결책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여 의류 재고 폐기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제도를 조사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었는지 기사, 국제기구 보고서, 논문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 국가가 존재하고, 관련하여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먼저 연구위원들은 대륙별로 담당자를 나누어 “의류 폐기물”, “의류 재고”와 관련된 법제도를 가진 국가, 기업의 자율적인 의류 재고 감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등을 리서치하였다.

이후 연구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적으로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기업의 의류 재고 보유량 및 폐기량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류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이고 마지막 유형은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입법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입법이 있거나 의류 기업들이 주도하여 만든 민간 협회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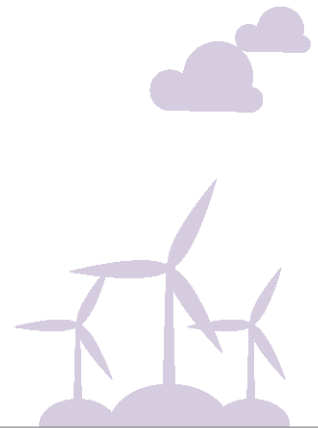
이후 법률이 제정된 시기와 시행된 기간,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정치 사회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 번째, 의류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와 유럽 연합]을 두 번째, 의류 재고의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재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로는 [독일과 벨기에]를 기타 방법으로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인 국가로는 [미국, 일본, 호주] 총 8개 국가와 유럽 연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 중 법률이 있는 국가의 경우 세계법제정보센터, 해당 국가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국내외 관련 기사,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의류 재고 폐기 관련 법과 정책, 입법의 배경,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각 국가의 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번역하였고, 각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원 순환에 대한 법령을 연구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김성배 교수를 찾아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자원 순환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교화하였다.

연구는 국가별 법령 번역 및 분석을 포함하여 법적 제도가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법적 제도가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나아가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본론



-
1. 의료 재고 폐기의 실태 및 환경적 영향
 2. 의료 재고 폐기 관련 해외 법제 및 정책 분석

1. 의류 재고 폐기의 실태 및 환경적 영향

의류 산업은 세계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글로벌 섬유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 8,372억 7,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 연평균 성장률(CAGR)은 7.4%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²¹⁾ 소비자의 구매력이 올라가며 의류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의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의 성장은 앞으로도 의류 산업의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글로벌 섬유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량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함께 의류의 소비와 폐기도 함께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호주순환섬유협회(ACTA, Australian Circular Text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의류의 30%는 판매되지 않고²²⁾,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00억에서 1,500억 개의 의류가 만들어지고 이 중 10%에서 40%가 판매되지 않는다²³⁾. 즉, 연간 80억 또는 600억 개의 의류가 초과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18일에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미판매 제품 폐기 보고 및 섬유제품 폐기 금지’인 이유는, 바로 현시점의 패스트 패션 문화로 인한 과잉 생산과 과소비의 사회 환경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에서 ‘폐기물’이 아닌 멸정한 상품을 폐기하는 관행부터 없애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반품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의 폐기 행위는 의류 및 섬유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행해졌고 적어도 1980년대부터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다.²⁴⁾

유명 브랜드일수록,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고 ‘희소성’이라는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는 재고가 남으면 극비리에 이를 소각한다.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이미지 유지보다는 재고를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창고비 등

21) Grand View Research(2024), Textile Market Size, Share & Growth Analysis Report, 2024-2030

22) Shani Wood, Environmental Officer City of Holdfast Bay(2018), CIRCULAR CLOTHING, Opportunities to increase textile resource recovery rates in South Australia

23) OC&C Strategy Consultants(2023), Doing more with less. Forecasting for success

24) 경향신문(2024, 07,11),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18일 발효...“재고 관리 체계 재고해야”

관리비, 재고가 자산으로 기록되어 부과되는 세금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를 소각 또는 매립한다. 일반 브랜드는 재고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이월 상품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이후에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업사이클링, 기부, 파쇄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을 시도하고, 남은 재고는 폐기한다.

의류 기업들이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된 상품을 고의로 파기 및 폐기하는 행위는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7개 의류 기업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의 소각 여부’를 설문한 결과 4개 기업이 ‘소각한다’라고 답하였고 ‘공개가 불가하다’라고 답한 기업이 1개, 응답을 거부한 기업이 1개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형 의류 기업들은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된 제품을 소각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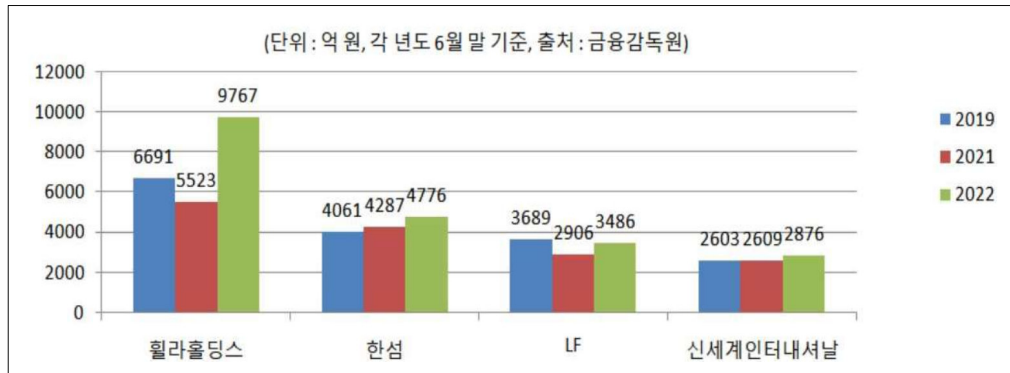


자료: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2021, 7, 1

[그림 II-1] 국내 매출 상위 7개 패션 기업 재고 상품 소각 여부 설문 조사

반품 및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거의 없으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섬, F&F, LF,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국내 주요 의류기업들의 재고자산은 지난 3년간 최대 40% 이상이 늘었고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이 사실만 봐도 재고량은 매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25) 아주경제(2024.5.23), [위기의 K-의류] 의류 소비는 주는데... 재고자산은 매년 역대 최대치



자료 : 금융감독원,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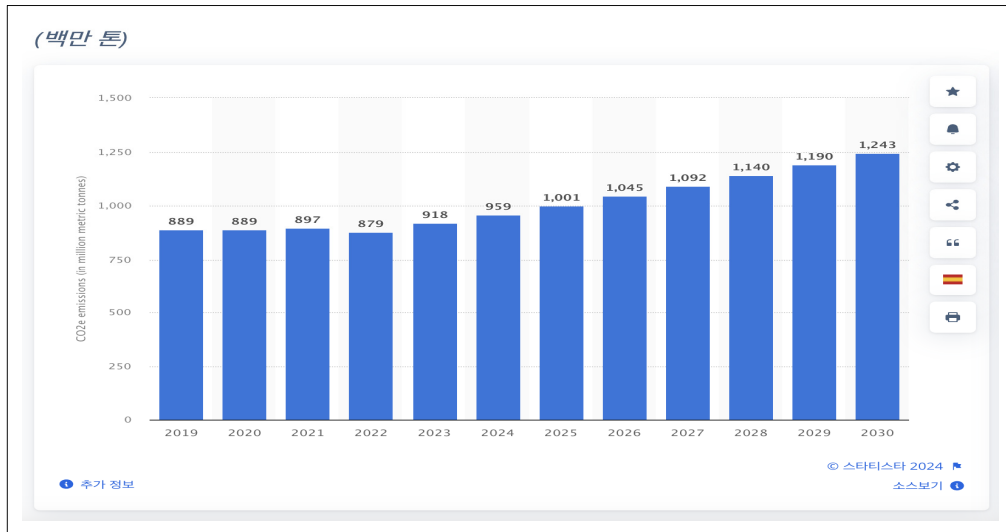
[그림 II-2] 주요 패션업체 재고자산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주요 의류 기업이 재고를 소각하는 주된 이유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재고 소각 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거나,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하는 비용 대비 소각 처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²⁶⁾ 즉, 관리비와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재고를 폐기한다.

팔리지 않은 재고를 폐기하는 행위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멸절한 제품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다. 앞서 I.1. 가. 연구의 배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의류 산업은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 중 하나로 간주되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22년 의류 산업으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8억 7,900만 톤으로 계산되었고, 2023년에는 약 9억 6,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 의류 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 의류 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2억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 그린포스트코리아(2021.05.21.), ‘재고 상품’ 불태운다? 지구 생각 좀 하세요!

27) Statista(2024.10.04.), 프랑스 패션 산업- 팩트와 통계(L’industrie de la mode en France - Faits et chiffres)



자료 : Statista 2024

[그림 II-3]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의류산업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류 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 문제는 대기, 해양, 토지 오염 등 다양하지만 그 중 특히, 합성 섬유로 인하여 제조된 의류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의 문제는 심각하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섬유는 오늘날 전 세계 의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원료를 실로 얇게 뽑아 직조한 화학섬유는 빨래할 때마다 잘게 조각나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 여러 합성섬유 소재로 제작된 흰 옷 1kg을 세탁했을 때 미세플라스틱 67만 5000개가 발생했다. 아크릴 소재 새 옷의 경우 16만 8,750개, 폴리에스터 면 혼방 소재 새 옷 50만 2,500개였다.²⁸⁾ 의류 재고를 소각할 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미세 섬유와 유독 가스를 포함한 인체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등이 방출되어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의류를 과잉 생산하고, 팔리지 않은 채 남은 재고를 소각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현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해서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 및 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28) 뉴스핌(2021. 7. 2),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의류와 빨래 때문"

2. 의류 재고 폐기 관련 해외 법제 및 정책 분석

가. 프랑스

자타공인 의류 강국 프랑스의 의류 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프랑스 경제에 직접적으로 375억 유로(한화 약 55조 원), 간접적으로 314억 유로(한화 약 46조 원)를 기여하여 총 689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랑스의 의류 산업은 국가 GDP의 3.1%를 차지하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직접적으로 616,000개, 간접적으로 38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프랑스 전체에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²⁹⁾ 프랑스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4번째로 큰 의류 수출국이기도 하다.³⁰⁾

2024년 프랑스 의류 시장 매출은 166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CAGR 2024~2029)은 6.52%로 예상³¹⁾될 정도로, 의류 산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두에 서서 의류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초로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재사용, 재유통,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 것이다.

프랑스는 이미 거의 모든 섬유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2016년 한해를 예로 들면, 210,000톤의 중고 섬유 및 신발을 수거하고 분류하여 그중 60%는 재사용하고 40%는 재활용하여 수거된 직물과 신발 중 1%만이 소각되어 사라졌다.³²⁾ 그런데도 2020년에 판매되지 않은 의류 상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상품 생산을 위한 불필요한 자원 소비, 관련 CO2 배출 및 유해 물질 배출, 폐기물 처리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020년 당시, 프랑스에서는 매년 총 6억 3,000만 유로의 미판매 상품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³³⁾

29) Institut Français de la Mode 및 Quadrat Etudes(2018년 11월), La Mode en France : Evaluation de son poids économique

30) 유로스탯 뉴스(2021. 4), '우리 옷은 어디에서 오는가'

31) statista(2024), Fashion France

32) 생태전환청(Agen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2023), La mode sans audessous-audessus

33) EEB(European Environmental Bureau)(2021, 09), POLICY BRIEF ON Prohibiting the Destruction of Unsold Goods 보고서

프랑스는 2020년 2월 10일에 AGECE 법을 채택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천연 자원과 생물 다양성 및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심층적으로 변화를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GECE 법, 즉,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의 130개 조항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AGECE법은 5가지 주요 영역 [1.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 2.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3. 낭비와 맞서 싸우고 사회 연대 차원의 재사용을 위해 싸우기, 4. 계획된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맞서 행동하기, 5. 더 낮게 생산하기]³⁴⁾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섬유, 의류 및 신발을 비롯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³⁵⁾가 적용되는, 판매되지 않은 비식품 제조물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비식품인 제조물의 재고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섬유, 의류 및 신발 브랜드의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불안정성과 구조에 맞서 싸우는 협회와 사회적 경제 조직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부를 고려해야 하고, 기부가 아니면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과잉 생산을 피하고 재고를 더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는 AGECE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법 L541-15-8조에 해당한다.

『낭비 퇴치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 제2020-105호』 번역본

제35조 3항

III. 「환경 법전」 제V권 제V편 제I장 제3절의1항 bis³⁶⁾를 다음의 제L541-15-8조로 보완한다.

« 제L541-15-8조

« I. 판매용 비식품류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특히 「노동법전」 제L3332-17-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회공익연대기업'으로 인가를 받은 빈곤퇴치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필요한 생필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고 본법전 제L541-1조가 명시한 처리 방법의 순서를

34) 프랑스 생태전환부 사이트

35) 프랑스는 섬유, 의류 신발 등의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제도)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준수하여 미판매 제품을 재생 이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생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기부한 미판매 제품의 보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은 관련 목적으로 수립된 협약으로 정한다.

« 명령으로 정한 목록상의 제품으로, 미판매 상태의 위생용품과 육아용품은 반드시 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보존일이 3개월 미만인 제품과 이 제항 제1문단에 명시된 단체 및 조직에 문의한 후에 해당 제품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I. 제L541-10-9조에 명시된 자는 본 조에 따라 미판매 제품의 보관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 III. 본 조가 명시한 미판매 비식품류 제품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개인의 경우 최대 3,000유로, 법인의 경우 최대 1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법전」 제L522-6조에 따라 해당 결정문은 행정제재 처분 부과 대상인 개인 및 법인의 비용 부담으로 게재할 수 있다.

« IV. 「사회보장법전」 제 L136-1-1조 제III항을 다음의 제 8호로 보완한다. :

« 8° 「상법전」 제 L442-5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덤핑 판매 한도 내에서 미판매 제품을 모든 세금이 포함된 정상 판매 가격의 50퍼센트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직원에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고용한 회사나 이 회사가 속한 그룹 내 모든 회사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회사 그룹의 범위는 「노동법전」 제L2331-1조의 정의에 따른다.

V. 소비자법 L. 511-7조의 21호 뒤에 23호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23° 소비자법 L. 541-15-8 조; ”.

« VI. 「환경법전」 제 L541-15-8조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1° 본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 원칙을 따랐던 전 제품에 관하여 국가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재사용, 재활용 또는 재활용 부문의 설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가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VII. 본 조 제 IV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VIII. 「소비자법전」 제 IV권 제 I 편 제 II장 제 2절을 다음의 제 L412-7조로 보완한다.

« 제L412-7조 최소 보존일이 지정된 식품의 경우, 이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섭취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명령으로 정한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낭비 퇴치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 제 2020-105호』원문

III. -La sous-section 1 bis de la section 3 du chapitre 1er du titre IV du livre V du code de l'environnement est complétée par un article L. 541-15-8 ainsi rédigé :

« Art. L. 541-15-8.-I.-Les producteurs, importateurs et distributeurs de produits non alimentaires neufs destinés à la vente sont tenus de réemployer, notamment par le

don des produits de première nécessité à des associations de lutte contre la précarité et des structure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bénéficiant de l'agrément "entreprise solidaire d'utilité sociale" tel que défini à l'article L. 3332-17-1 du code du travail, de réutiliser ou de recycler leurs invendus, dans le respect de la hiérarchie des modes de traitement mentionnée à l'article L. 541-1 du présent cod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s contribuent aux frais de stockage des produits invendus donnés sont définies par les conventions établies à cet effet. Ces obligations ne s'appliquent cependant pas :

- « 1° Aux produits dont la valorisation matière est interdite, dont l'élimination est prescrite ou dont le réemploi, la réutilisation et le recyclage comportent des risques sérieux pour la santé ou la sécurité ;
- « 2° Aussi longtemps que les conditions nécessaires pour réaliser le réemploi, la réutilisation ou le recyclage ne répondent pas à l'objectif de développement durable mentionné à l'article L. 110-1.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2° sont précisées par le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vu au dernier alinéa du III du présent article.
- « Les produits d'hygiène et de puériculture,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demeurés invendus doivent nécessairement être réemployés, sauf pour les produits dont la date de durabilité minimale est inférieure à trois mois et à l'exception des cas où aucune possibilité de réemploi n'est possible après une prise de contact avec les associations et structur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
- « II.-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541-10-9 sont tenues de gérer les produits invendus lorsqu'elles en assurent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 « III.-Tout manquement aux obligations de gestion des produits non alimentaires neufs invendus mentionnées au présent article est passible d'une amende administrative dont le montant ne peut excéder 3 000 € pour une personne physique et 15 000 € pour une personne moral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2-6 du code de la consommation, la décision peut être publiée aux frais de la personne sanctionnée.
- « Cette amende est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chapitre II du titre II du livre V du même code.
- «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IV. -Le III de l'article L. 136-1-1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est complété par un 8° ainsi rédigé :

« 8° Dans la limite du seuil de revente à perte, tel que défini à l'article L. 442-5 du code de commerce, les réductions tarifaires jusqu'à 50% du prix de vente public normal, toutes taxes comprises, dont bénéficient les salariés sur les produits initialement destinés à la vente mais qui ne peuvent pas ou ne peuvent plus être vendus par l'entreprise qui les emploie ou par toute entreprise du groupe auquel ils appartiennent, le groupe étant entendu au sens de l'article L. 2331-1 du code du travail. »

V. -Après le 21° de l'article L. 511-7 du code de la consommation, il est inséré un 23° ainsi rédigé :

« 23° De l'article L. 541-15-8 du même code ; ».

VI. -L'article L. 541-15-8 du code de l'environnement s'applique :

1° A une dat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t au plus tard le 1er janvier 2022, s'agissant de l'ensemble des produits qui étaient soumis au principe de responsabilité élargie du producteur antérieurement à la publication de la présente loi ;

2° A des date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n considération des délais nécessaires pour mettre en place les filières de réemploi, réutilisation ou recyclage adaptées aux produits concernés dans les autres cas, et au plus tard le 31 décembre 2023.

VII. -Le IV du présent article entre en vigueur le 1er janvier 2021.

VIII. -La section 2 du chapitre II du titre Ier du livre IV du code de la consommation est complétée par un article L. 412-7 ainsi rédigé :

« Art. L. 412-7.-Lorsqu'un produit alimentaire comporte une date de durabilité minimale, celle-ci peut être accompagnée d'une mention, précisée par décret, informant les consommateurs que le produit reste consommable après cette date. »

프랑스에서 미판매 제품이란, 특정 고객이나 염가 특매업자들에게도 최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말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통적인 판매 채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없거나 내부 채널(시즌 판매, 프로모션, 공장

36) 재사용 및 폐기물 방지를 위한 투쟁(L.541-15-3~L.541-15-16조)

매장 및 브랜드 센터, 창고 또는 인근에서 이벤트 판매, 직원에게 판매 또는 선물 등)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장이나 공장을 떠나는 모든 신제품'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새 상품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폐기해야 하고, 따라서 미판매 제품은 환경법 L.541-1-1조에 명시된 폐기물의 법적 정의에 따라, '소유자가 폐기하거나 폐기할 계획 또는 의무가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건에 속하는' 폐기물이다.

프랑스 환경법 L.541-1-1조는 유럽 기본 지침 2008/98/EC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 계층 구조와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 계층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사용'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을 원래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모든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사용은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을 연장하여 폐기물이 되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므로 폐기물 '예방'의 일부이다.

『환경법』 번역본

L.541-1-1조

폐기물 : 소유자가 폐기하거나 폐기할 계획 또는 의무가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건 또는 보다 일반적 으로 모든 동산 자산을 말한다. ;

예방(prevention) :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취하는 모든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다음 항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의 재사용 또는 사용 수명 연장을 통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에 기여하는 경우
- 생성된 폐기물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경우
- 물질, 재료 또는 제품 안에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사용(Réemploi) : 폐기물이 아닌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을 원래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중간 생략.....

재활용(Réutilisation) : 폐기물이 된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재활용을 위한 준비 : 폐기물이 된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의 재활용(Valorisation, 매립 및 유기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법)을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사전 처리없이 통제, 세탁 또는 수리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재활용(Recyclage) : 유기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원래의 기능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물질, 재료 또는 제품으로 재처리하는 모든 회수 작업. 폐기물 에너지화 작업, 폐기물 연료화 작업 및 매립 작업은

재활용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활용(Valorisation, 매립 및 유기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법) :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다른 물질, 재료 또는 제품의 대체물로 폐기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혹은 폐기물 생산자를 포함하여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준비하는 것이 주된 결과인 모든 작업을 말한다.

『환경법』 원본

Article L541-1-1

Au sens du présent chapitre, on entend par :

Déchets : toute substance ou tout objet, ou plus généralement tout bien meuble, dont le détenteur se défait ou dont il a l'intention ou l'obligation de se défaire ;

Prévention : toutes mesures prises avant qu'une substance, une matière ou un produit ne devienne un déchet, lorsque ces mesures concourent à la réduction d'au moins un des items suivants :

- la quantité de déchets générés, y compris par l'intermédiaire du réemploi ou de la prolongation de la durée d'usage d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
- les effets nocifs des déchets produits sur l'environnement et la santé humaine ;
- la teneur en substances dangereuses pour l'environnement et la santé humaine dans l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

Réemploi : toute opération par laquelle d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qui ne sont pas des déchets sont utilisés de nouveau pour un usage identique à celui pour lequel ils avaient été conçus ;

Gestion des déchets : le tri à la source, la collecte, le transport, la valorisation, y compris le tri, et,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plus largement, toute activité participant de l'organisation de la prise en charge des déchets depuis leur production jusqu'à leur traitement final, y compris la surveillance des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déchets après leur fermetu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relativ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ainsi que les activités de négoce ou de courtage et la supervision de l'ensemble de ces opérations ;

Producteur de déchets : toute personne dont l'activité produit des déchets (producteur initial de déchets) ou toute personne qui effectue des opérations de traitement des déchets conduisant à un changement de la nature ou de la composition de ces déchets (producteur subséquent de déchets) ;

Détenteur de déchets : producteur des déchets ou toute autre personne qui se

trouve en possession des déchets ;

Collecte : toute opération de ramassage des déchets en vue de leur transport vers une installation de traitement des déchets ;

Traitement : toute opération de valorisation ou d'élimination, y compris la préparation qui précède la valorisation ou l'élimination ;

Réutilisation : toute opération par laquelle d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qui sont devenus des déchets sont utilisés de nouveau ;

Préparation en vue de la réutilisation : toute opération de contrôle, de nettoyage ou de réparation en vue de la valorisation par laquelle d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qui sont devenus des déchets sont préparés de manière à être réutilisés sans autre opération de prétraitement ;

Recyclage : toute opération de valorisation par laquelle les déchets, y compris les déchets organiques, sont retraités en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aux fins de leur fonction initiale ou à d'autres fins. Les opérations de valorisation énergétique des déchets, celles relatives à la conversion des déchets en combustible et les opérations de remblayage ne peuvent pas être qualifiées d'opérations de recyclage ;

Valorisation : toute opération dont le résultat principal est que des déchets servent à des fins utiles en substitution à d'autres substances, matières ou produits qui auraient été utilisés à une fin particulière, ou que des déchets soient préparés pour être utilisés à cette fin, y compris par le producteur de déchets ;

프랑스 생태전환청(Agen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연구에 따르면, 2021년도 미판매 의류 및 신발은 프랑스 의류 및 신발 부문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약 17억 유로(한화 약 2조 5,600억 원)의 추정 시장 가치에 해당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미판매 및 반품 물품 폐기 금지 조치는, 유럽 환경청이 2024년 3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보고 의무가 제한되어 있어 집행과 투명성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³⁷⁾

한편, 유럽 환경국(EEB)은 프랑스가 의류 산업에 AGEC 법을 적용한 이후, 대체로

37) Roberts, H., et al(2023), 'Product destruction : Exploring unsustainable production-consumption systems and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35, pp. 300-312.

기부의 증가는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존에 남은 물량은 전량 폐기하던 럭셔리 브랜드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던 브랜드의 기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재고 폐기를 완전히 금지하여 기존 관행을 종식시키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³⁸⁾

프랑스는 의류 및 섬유에 대해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거나 이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세계 최초로 2008년에 도입하여 제품의 에코 디자인, 폐기물 방지, 제품의 유통 기한 연장, 수명 종료 관리 등 의류 섬유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순환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는 2009년에 환경부 및 관련 정부 부처가 법령에 따라 승인하고 꾸준히 재승인을 받아 프랑스 내 발생하는 전체 의류 폐기물의 수거, 분류 및 회수 등을 관리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 환경 조직인 ‘리패션(Refashion)’이 있다. 리패션은 패션 기업들이 지불한 환경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브랜드가 생태적 디자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도록 돕고, 프랑스의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체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AGEC 법은 프랑스 의류 폐기물 관리의 핵심 제도로서 섬유 산업 부문의 순환 경제를 앞당기고 있다.

나. 스페인

스페인은 패스트 패션 산업의 대표적인 국가로, 세계 의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패스트 패션의 대표 브랜드이자, 2022년 브랜드 가치 세계 7위, 2023년 순매출액이 260억 5천만 유로(한화 약 38조 8,130억 원)에 달하는 자라(Zara)³⁹⁾와 전 세계 115개국에서 약 2,7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2023년 매출액 31억 유로(한화 약 4조 6,185억 원)를 기록한 망고(Mango)⁴⁰⁾ 등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스페인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발렌시아가(Balenciaga), 로에베(LOEWE) 등 명품 의류 기업도 스페인의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의류 산업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의류 산업은 스페인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 INE(통계청) 및 EURATEX

38) 유럽환경청(EEA) (2024.03), 유럽 순환 경제 속 반품 및 미판매 섬유의 양과 폐기량(Volumes and destruction of returned and unsold textiles in Europe's circular economy)

39) Statista(2023), Inditex : net sales worldwide by brand

40) Mango Fashion Group(2024.03.11.), 망고, 2023년 매출 신기록 달성, 2026년까지 매출 40억 유로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전략 계획 발표

(유럽섬유의류연맹)에 따르면 2022 년 스페인 섬유산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66.5 억 유로에 달했다⁴¹⁾. 특히 Inditex(Zara의 모회사)와 같은 세계적인 의류 기업들이 스페인 의류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22년 기준 의류 산업의 수출액은 1,972만 유로(한화 약 291억 원)기록하였고, 스페인 전역에 걸쳐 수만 개의 의류 소매점과 의류 관련 기업들이 운영되며, 약 1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제공⁴²⁾하여 스페인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의류 산업은 스페인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의류 산업은 매년 약 100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생성했고, 이는 1인당 약 20kg에 해당하여 유럽연합 평균인 7kg/1인의 약 3배에 달했다. 스페인에서 수거되는 폐의류 중 약 12%만이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고⁴³⁾ 나머지 88%는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대기,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환경과 인간 건강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스페인 내 여러 환경단체들은 의류 폐기물, 특히 의류 재고 폐기와 그로 인해 오염된 토양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민들은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틀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해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렇게 스페인 내부에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때, 유럽 전역에서도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 사용을 줄이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에 채택된 유럽 순환경제 패키지(European Circular Economy Package)와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는 회원국들이 자국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페인 환경부는 2019년 경 유럽 연합의 순환 경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존 법률을 강화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0년 스페인 정부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단체, 산업계, 지역 정부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및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입법 과정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으나,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의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어 법률 제정에 추진력을 얻었다.

41)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비즈니스센터(2023.11.14.), 스페인 이탈리아 패션시장 동향보고서

42) Fashionunited(2023.01), global fashion industry statistics, Spain

43) 로이터 기사(2024.10.11.), Spain's top fashion retailers to launch trial to collect clothes waste in 2025.

그리고 2022년 10월 스페인은 의류 산업의 환경 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r)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의류 재고 폐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판매 섬유 제품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여 정부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 ② 2025년 1월 1일까지 별도의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③ 2035년까지 섬유를 포함한 도시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최대 65%까지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스페인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 제18조 제2항은 특히 섬유, 장난감, 전자제품 등 부패하지 않는 제품의 미판매 재고 상품을 폐기 또는 매립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어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번역본

제18조. 예방 조치

1.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할 당국은 최소 다음과 같은 목적의 조치를 채택한다.
 - a)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모델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 b)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사용수명 및 조기 노후화 방지 포함), 수리, 재사용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사용을 장려한다.

(생략)

2. 특히 섬유, 장난감, 전자제품 등 부패하지 않는 제품의 미판매 재고 상품을 폐기 또는 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이 다른 규정에 따라 또는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재고들은 먼저 기부를 포함한 재사용으로 분류되고, 이것이 불가할 경우 제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사용 또는 폐기물 계층 구조의 다음 단계로 처리된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원문

Artículo 18. Medidas de prevención.

1. Para prevenir la generación de residuos, las autoridades competentes adoptarán

medidas cuyos fines serán, al menos, los siguientes :

- a) Promover y apoyar los modelos de producción y de consumo sostenibles y circulares.
 - b) Fomentar el diseño, la fabricación y el uso de productos que sean eficientes en el uso de recursos, duraderos y fiables (también en términos de vida útil y ausencia de obsolescencia prematura), reparables, reutilizables y actualizables.
2. Queda prohibida la destrucción o su eliminación mediante depósito en vertedero de excedentes no vendidos de productos no perecederos tales como textiles, juguetes o aparatos eléctricos, entre otros, salvo que dichos productos deban destruirse conforme a otra normativa o por protección del consumidor y seguridad. Dichos excedentes se destinarán en primer lugar a canales de reutilización, incluyendo su donación, y cuando esto no sea posible, a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o a las siguientes opciones de la jerarquía de residuos, respetando el orden establecido en el artículo 8

위 제18조에서 인용한 동법 제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번역본**

제8조. 폐기물 계층 (단계)

1. 폐기물 발생 방지 및 관리 관련 법률 및 정책 전개 시, 권한당국은 전반적인 환경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폐기물 계층을 적용한다.
 - a) 폐기물 발생 방지
 - b) 재사용 준비
 - c) 재활용
 - d)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기타 유형의 회수
 - e) 폐기 처리

단, 특정 폐기물 흐름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기의 에너지 계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환경 보호 분야의 예방 및 지속가능성이 라는 일반적 원칙,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자원 보호, 환경이 인간 건강,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폐기물 생성 및 관리의 영향에 대하여 수명 주기 접근법으로 증명을 한 후에 다른 우선순위를 채택할 수 있다.

2. 폐기물 계층 적용을 위하여, 권한당국은 경제적 수단과 제5부속서에 명시한 바와 같은 기타 장려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원본

Artículo 8. Jerarquía de residuos.

1. Las autoridades competentes, en el desarrollo de las políticas y de la legislación en materia de prevención y gestión de residuos, aplicarán para conseguir el mejor resultado medioambiental global, la jerarquía de residuos por el siguiente orden de prioridad :

- a) Prevención,
- b)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 c) reciclado,
- d) otro tipo de valorización, incluida la valorización energética y
- e) eliminación.

No obstante, si para conseguir el mejor resultado medioambiental global en determinados flujos de residuos fuera necesario apartarse de dicha jerarquía, se podrá adoptar un orden distinto de prioridades previa justificación por un enfoque de ciclo de vida sobre los impactos de la generación y gestión de esos residuos, teniendo en cuenta los principios generales de precaución y sostenibilidad en el ámbito de la protección medioambiental, la viabilidad técnica y económica, la protección de los recursos, así como el conjunto de impactos medioambientales sobre la salud humana, económicos y sociales, de acuerdo con los artículos 1 y 7.

2. Para la aplicación de la jerarquía de residuos,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berán usar instrumentos económicos y otras medidas incentivadoras, como las que se relacionan en el anexo V.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은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탕이 되는 조항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번역본**

제24조.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를 위한 준비

1. 관할 당국은 제[보급1] 7조 및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이 재사용, 재활용 또는 기타 회수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원문**

Artículo 24.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reciclado y valorización de residuos.

1. Las autoridades competentes adoptarán las medidas necesarias para asegurar que los residuos se destinen 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reciclado u otras operaciones de valorización, de conformidad con los artículos 7 y 8.

위 제24조 제1항에서 인용한 동법 제7조 조문은 아래와 같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번역본**

제7조.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

1. 권한당국은 폐기물 관리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a) 물, 공기 또는 토양, 그리고 동식물에 위험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
 - b) 소음, 냄새 또는 연기로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 c) 경관, 자연 공간,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별관심구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2. 폐기물과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는 기후변화대응전략 및 해당 보건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원문**

Artículo 7. Protección de la salud humana y el medio ambiente.

1. Las autoridades competentes adoptarán las medidas necesarias para asegurar que la gestión de los residuos se realice sin poner en peligro la salud humana y sin dañar al medio ambiente y, en particular :
 - a) No genere riesgos para el agua, el aire o el suelo, ni para la fauna y la flora.
 - b) No cause incomodidades por el ruido, los olores o humos
 - c) No afecte negativamente a paisajes, espacios naturales ni a lugares de especial interés legalmente protegidos.
2. Las medidas que se adopten en materia de residuos deberán ser coherentes con las estrategias de lucha contra el cambio climático, y con las correspondientes políticas de salud pública.

또한 제26조 에서는 2035년까지 섬유를 포함한 도시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최대 65%까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번역본**

제26조.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 목표

1.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원의 고효율성으로 유럽 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관할 당국은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목표가 달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생략
 - b) 생략
 - c)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최소 55%(총 중량 대비 최소 5%)까지 늘릴 예정이다. 재사용할 수 있는 섬유 폐기물,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가구 및 기타 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 d)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최소 60%까지 늘릴 예정이다. 총 중량의 최소 10%는 재사용에 해당하며, 주로 섬유 폐기물,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가구 및 재사용할 수 있는 기타 폐기물이다.
 - e) 203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최소 65%까지 늘릴 예정이다. 총 중량의 최소 15%는 재사용에 해당하며 주로 섬유 폐기물,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가구 및 재사용할 수 있는 기타 폐기물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원문**

Artículo 26. Objetivos de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reciclado y valorización.

1. Con objeto de cumplir los objetivos de la ley y de contribuir hacia una economía circular europea con un alto nivel de eficiencia de los recursos,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berán adoptar las medidas necesarias, a través de los planes y programas de gestión de residuos, para garantizar que se logran los siguientes objetivos :
 - a) 생략
 - b) 생략
 - c) Para 2025, se aumentará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y el reciclado de residuos municipales hasta un mínimo del 55% en peso; al menos un 5% en

peso respecto al total corresponderá a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fundamentalmente de residuos textiles, residuos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muebles y otros residuos susceptibles de ser preparados para su reutilización.

- d) Para 2030, se aumentará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y el reciclado de residuos municipales hasta un mínimo del 60% en peso; al menos un 10% en peso respecto al total corresponderá a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fundamentalmente de residuos textiles, residuos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muebles y otros residuos susceptibles de ser preparados para su reutilización.
- e) Para 2035, se aumentará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y el reciclado de residuos municipales hasta un mínimo del 65% en peso; al menos un 15% en peso respecto al total corresponderá a la preparación para la reutilización, fundamentalmente de residuos textiles, residuos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muebles y otros residuos susceptibles de ser preparados para su reutilización.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r) 시행에 따라 의류 기업들은 팔리지 않은 재고 의류를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디텍스(Inditex, Zara의 모회사)는 재고를 기부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재사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유엔 난민 기구(UNHCR), 적십자, 카리타스와 같은 기관에 재고 의류를 기부하고 있다. 2023년 1월 섬유폐기물을 관리하는 사회연대경제 이니셔티브 스페인 협동조합 모다 리(Moda Re) 의류제품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3년간 총 350만 유로 투자를 약속했고, 2022년 5월에는 100% 폐기 의류로 만든 고품질 재활용 섬유 인피나(Infinna)를 생산하는 핀란드 기업 인피니티드 화이버(Infinited Fiber)사와 1억 유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2024년 까지 모든 인디텍스 제품의 재활용 섬유 비율을 30%, 2030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발표했다⁴⁴⁾. Mango는 모든 매장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여 고객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44)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비즈니스센터(2023.11.14.), 스페인 이탈리아 패션시장 동향보고서 11쪽 참조

의류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고를 재활용하거나 기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활용 섬유나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섬유 생산자 책임 제도(EPR, responsabilidad ampliada del productor) 도입을 예고하였고, 제도 도입 전임에도 Inditex, Mango 등 주요 기업들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r)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섬유 폐기물 관리 협회(Asociación para la Gestión del Residuo Textil)"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들은 생산자 책임 확대 시스템(SCRAP)을 통해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및 처리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SCRAP(Sistema Colectivo de Responsabilidad Ampliada del Productor)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특히 의류 및 신발과 같은 폐기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짐에 따라 점차 많은 스페인 내 의류 기업들이 재고 소각을 중단하고 기부,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고 의류의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가 속해 있는 영국의 의류와 섬유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620억 파운드(약 109조원)에 달하고, 1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⁴⁵⁾, 스코틀랜드의 의류산업은 영국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섬유 산업 매출량은 8억 4천 4백만 파운드(약 1조 5천억원), 총부가가치(GVA)는 약 3억 5백만 파운드(약 5,373억원)에 달하고, 8,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⁴⁶⁾ 스코틀랜드 의류 산업은 특히 전통적인 의류 자산인 트위드, 타탄과 같이 특유의 섬유와 패턴을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글로벌

45) Oxford Economics(2023.10), The Fashion & Textile Industry's Footprint in the UK

46) 스코틀랜드 정부(2022.03.01.), Scotland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 industry leadership groups and sector groups - evidence

시장에서 스코틀랜드의 의류 산업은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wool), 캐시미어(cashmere), 트위드(tweed), 타탄(tatan)과 같은 고급 섬유 제품은 세계 150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고, 구찌,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과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스코틀랜드가 속해 있는 영국의 목표인 2050년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 제로웨이스트 스코틀랜드(Zero Waste Scotland-이하 ZWS라 한다)에서 2022년 11월에 발간한 순환성 격차 보고서 2022(Circularity Gap Report Scotland 2022)에 의하면, 스코틀랜드의 국민 1인당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21.7톤으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이며, 자원의 1.3%만이 순환되고 98% 이상이 새로운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다.⁴⁷⁾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현재의 자재 소비 수준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더 광범위한 정책 목표, 특히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해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⁴⁸⁾ 또한 ZWS의 탄소 특정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는 스코틀랜드 무게 기준으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4%에 불과하지만, 탄소 배출량은 32%에 해당하여 가정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⁴⁹⁾

영국 전역에서 의류 재고의 폐기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계기는 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2,860만 파운드 (한화 약 507억 원) 가량의 가방, 의류, 향수 등의 재고 제품을 소각한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다.⁵⁰⁾ 또한, 2021년 스코틀랜드의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는 팔리지 않은 재고 물품들을 폐기하는 모습이 ITV에 의해 알려져 사용조차 되지 않은 새 제품의 폐기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⁵¹⁾

의류 재고 폐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25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과 자선단체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순환 공동체(Circular Communities Scotland)는, 2022년 스코틀랜드 순환경제를 위한 정책 보고서(Policy Paper for Scotland's

47) Circle Economy(2022), Circularity Gap Report Scotland (P6. Executive Summary)

48) 스코틀랜드 의회, 넷제로, 에너지, 교통 위원회(2024.02.28.), Stage 1 Report on the Circular Economy (Scotland) Bill (P18. Why do we need a more circular economy?)

49) Zero Waste Scotland(2023.06.06.), Top ideas for circular textiles in Scotland

50) BBC(2018.07.19), Burberry burns bags, clothes and perfume worth millions

51) Circular. For Resource and Waste Professionals(2021.06.23.), ITV investigation claims Amazon destroys millions of items of unsold stock each year.

Circular Economy, 2022)⁵²⁾에서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 폐기 금지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8. Ban unnecessary product destruction), 2023년 발행한 보고서(Policy Paper for Scotland's Circular Economy 2023)⁵³⁾에서는 순환 경제 법안(Circular Economy Bill)의 미판매 또는 반품된 제품의 처분에 대한 제한에 있어 재활용보다 재사용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영향과 지역활동 보호를 위해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의 수출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2.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unsold consumer goods). 이 단체는 스코틀랜드 순환경제법이 2024년 8월 최종 승인되기 전, 4월에 공개한 간략한 보고서(Circular Economy Bill, Stage 2)⁵⁴⁾에서 미판매 재고 폐기 금지 법안에 대해, 소각할 수 있었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이 아닌 사용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4.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Unsold Goods). 기후 변화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비정부 기구 연합 Stop Climate Chaos의 스코틀랜드 지부 Stop Climate Chaos Scotland(SCCS)는 2022년 기후 선언문(Climate Manifesto)⁵⁵⁾을 통해 스코틀랜드 순환 공동체(Circular Communities Scotland)의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는 2024년 8월 8일에 채택된 법률 제 2024 asp 13호, 즉 Circular Economy (Scotland) Act⁵⁶⁾ (순환경제법) 9조를 통해, 2009 스코틀랜드 기후 변화법 (The Climate Change Scotland Act 2009) 제 78조에 미판매 소비재 폐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조항에서 소비재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소비하도록 의도된 상품을 의미하여 섬유 제품을 포함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미판매 제품의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 미판매 재고 제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을 막도록 한다.

52) Circular Communities Scotland(2022. 05), POLICY PAPER FOR SCOTLAND'S CIRCULARECONOMY A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P11.

53) Circular Communities Scotland(2023. 08), Our call for a strong and ambitious circular economy bill, P.5

54) Circular Communities Scotland(2023. 08), Circular Economy Bill, Stage 2, P.3

55) Stop Climate Chaos Scotland(2022), Ban unnecessary product destruction

56)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Scotland) Act) (2024)

『순환 경제법 2024 ASP 13』 번역본

미판매 소비자 폐기 제한

제9조

- (1) 2009년 기후변화(스코틀랜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78조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미판매 소비자의 폐기에 대한 제한”

78A 미판매 소비자의 폐기에 대한 제한

- (1) 스코틀랜드 장관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판매 소비자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소비자”란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소비하도록 의도된 상품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소비자”에는 식품(규정 EC No. 178/2002의 의미)이 포함되지 않는다.
- (4)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 “판매되지 않은” 것이다.
- (5) 이 조에서 “소비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은-
 - (i)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사용 또는 수령하는 자, 그리고
 - (ii)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또는 수령하지 않는 자, 또는
 - (b)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의 과정에서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또는 수령하는 사업(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포함).
- (6) (1)항에 따른 시행령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미판매 소비자의 특정 유형을 명시,
 - (b) 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자에 대한 조항 포함,
 - (c) 시행령의 목적상 “처분”의 의미에 대한 조항 포함,
 - (d) 시행령의 목적상 “미판매”의 의미에 대한 추가 조항 포함,
 - (e) 폐기물 계층에 따라 미판매 제품의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우선시하는 조항 포함,
 - (f)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면제 조항 제공,
 - (g) 제89조에 따른 경우 다음에 대한 조항 포함.
 - (i) 시행령과 관련된 집행기관,
 - (ii) 해당 당국의 기능
 - (h) 규칙의 집행 관한 기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7) 제(6)항 제(h)호에 따른 집행에 관한 조항에는 특히 다음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 (a)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집행기관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b) 집행당국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그 제출에 관한 사항,
- (c) 규정의 요건 미준수와 관련된 위법행위,
- (d) 집행기관이 또는 집행기관을 대신하여 규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지를 제공.
- (8) 스코틀랜드 장관은 (1)항에 따른 규정을 포함하는 스코틀랜드 행정위임입법의 초안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스코틀랜드 장관은 (1)항에 따른 규정이 제정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즉시 규정에 의해 부여된 기능과 관련하여 시행 기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 (10) 집행 기관은 (9)항에 따라 발표된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순환 경제법 2024 ASP 13』 원문

9.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unsold consumer goods

(1) The Climate Change (Scotland) Act 2009 is modified as follows.

(2) After section 78 insert—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unsold consumer goods

78A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unsold consumer goods

- (1) The Scottish Ministers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disposal of unsold consumer goods if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to do so for the purpose of reducing waste.
- (2) In subsection (1), “consumer goods” means goods intended to be purchased, used or consumed by a consumer.
- (3) But “consumer goods” does not include food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EC) No. 178/2002).
- (4) Consumer goods are “unsold” if they have not been sold to, or have been returned by, a consumer.
- (5) In this section, “consumer” means—
 - (a) an individual—
 - (i) who purchases, uses or receives goods or services which are supplied in the course of a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son supplying them, and
 - (ii) who is not purchasing, using or receiving the goods or services wholly or mainly in the course of a business carried on by the individual, or
 - (b) a business (including a business carried on by an individual) which purchases, uses or receives goods or services which are supplied in the course of a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son supplying them.

- (6) Regulations under subsection (1) may in particular—
- (a) specify the particular types of unsold consumer goods to which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apply,
 - (b) include provision about the persons to whom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apply,
 - (c) include provision about the meaning of “disposal”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 (d) includ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meaning of “unsold”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 (e) include provision to prioritise the re-use, rather than recycling of unsold goods, in line with the waste hierarchy,
 - (f) provide for exemptions from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 (g) subject to section 89, include provision about—
 - (i) the enforcement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s, and
 - (ii) the functions of that authority,
 - (h) include other provision about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 (7) Provision about enforcement under subsection (6)(h) may in particular include provision—
- (a) enabling functions of the enforcement authority to be carried out on its behalf by persons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b) about the keeping of records and their production to the enforcement authority,
 - (c) about offences in relation to failur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in the regulations,
 - (d) for the giving of notices by or on behalf of the enforcement authority offering a person the opportunity of discharging any liability to conviction for an offence under the regulations by payment of a fixed penalty.
- (8) Before laying a draft of a Scottish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regulations under subsection (1) before the Scottish Parliament, the Scottish Ministers must consult such persons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 (9) The Scottish Ministers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regulations under subsection (1) are made, publish guidance for the enforcement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functions conferred on it by the regulations.
- (10) The enforcement authority must have regard to any guidance published under subsection (9).”

라. 유럽연합

유럽연합(EU)에서 의류 산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의류 및 섬유 산업은 2022년 1,470억 유로(한화 약 216조 7,800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고⁵⁷⁾, 의류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는 5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제공하며⁵⁸⁾, 약 19만 2천 개의 의류 기업이 유럽 연합 국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류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의류 산업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다.

의류 및 섬유 산업은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주거 및 교통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및 자원 소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EU 27개 회원국은 690만 톤의 섬유 완제품을 생산하여 1억 2,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1억 7,500만 톤의 원재료와 24,000만 m³의 물을 사용하면서 18만 km²의 토지를 점유했다. 유럽 연합의 소비자들은 연간 520만 톤에서 750만 톤, 즉 260억 벌의 의류를 폐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는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순환 경제 이행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유럽연합(EU)에서 의류 재고 폐기 금지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시민 환경단체와 기업 간의 사회적 논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럽 환경국(EEB)과 같은 단체는 EU 차원에서 의류 재고 파괴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류와 전자제품 등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대규모로 파괴되는 관행이 자원의 과잉 소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EU의 순환 경제 목표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EE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기부와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 프랑스 등 각국에서 추진 중인 재고 폐기 금지 법안을 EU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의류 기업은 재고 폐기 금지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몇몇 의류 대기업들은 재고 의류의 기부 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고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 2009/125/EC)을 제정하여 에너지 관련 제품(ErP, Energy-related Products)의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57) 패션저널 OK fashion(2022.12.29), 섬유패션, 290조 규모 EU시장 규제 뚫어야 산다.

58) 유럽연합위원회(2024), Fashion and high-end industries in the EU 보고서

59) 패션인사이트(2023. 11. 6) 패션과 럭셔리업계 친환경 전환 너무 더디다.

높이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운영하였다. 이 지침은 제품이 개발, 생산,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사용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류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다른 제품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 2022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여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2024년 5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이하 ‘에코디자인 규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18일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제품별 규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팔리지 않은 의류와 신발 제품의 파괴 금지, ②의류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③ 의류 제품 특히 재고의 폐기와 그 이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규정 등이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로 2026년 7월 19일부터 팔리지 않은 의류와 신발의 파괴를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에는 6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들은 매년 파괴된 의류와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번역본

제VI장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제23조

폐기 금지의 일반 원칙

사업자는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필요성을 방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필수 조치를 실시한다.

제25조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 2016년 7월 19일 부로, 부속서VII에 열거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30년 7월 19일 부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2. 제1항의 금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해당 금지를 우회할 목적으로 자사에게 공급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을 폐기할 수 없다.
3. 집행위원회는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부속서VII 개정을 위한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지닌다.
 - (a) 신규 제품의 파기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신규 제품의 추가
 - (b) 제품군 내 각 항목에 대하여 규정(EEC) 제2658/87호 별지에 따라 부여된 상품 코드 또는 설명이 수정됨에 따라 제품군 내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정을 위한 동 항목의 현행화
4. 제3항a호에 따라 채택할 위임법률을 작성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a) 특정 미판매 소비자 제품에 대한 폐기의 발생률과 그러한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b)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를 고려한다.
 - (c) 가용한 최상의 증거와 분석결과를 및 필요에 따른 추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상기 위임법률에서는 적용일을 명시하며, 적용되는 등급별 조치 또는 경과조치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한다.
5.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부속서VII에 열거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금지를 감경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해당 폐기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72조에 따른 위임법률을 채택한다.

- (a) 건강, 위생 및 안전상의 사유
- (b) 제품 취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제품 반환 후 확인된 제품 훼손으로서, 비용효율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훼손
- (c) 관련 유럽연합법 및 국내법과 기술 표준에 따른, 당초 용도에 대한 제품의 부적합성
- (d) 기증을 위해 제공된 제품의 수령 거부
- (e) 재사용 준비 또는 재제조에 대한 제품의 부적합성
- (f)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제품의 판매 불능
- (g) 폐기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조치인 경우

또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금지 또는 제24조에 명시된 공개 의무 중 관련 규정이 해당 기업이 그러한 금지 또는 의무를 우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위임법률에서는 동 규정이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언급한 위임법률 중 최초 법률은 2025년7월19일까지 채택한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원문

CHAPTER VI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Article 23

General principle of prevention of destruction

Economic operator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vent the need to destroy unsold consumer products

Article 25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1. From 19 July 2026, the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as listed in Annex VII shall be prohibited.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micro and small enterprises.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19 July 2030.

2. Economic operator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prohibi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destroy unsold consumer products supplied to them with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that prohibition.

3. The Commission is empowered to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in order to amend Annex VII :

(a) to add new products, in order to take accou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ir destruction;

(b) to update the entries within product groups, in order to align them to modifications of their respective commodity

codes or descriptions that are made in Annex I to Regulation (EEC) No 2658/87, where necessary.

4. When preparing a delegated act to be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3, point (a), the Commission shall :

(a) assess the prevalence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destruction of certain unsold consumer products;

(b) take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economic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24(1);

(c) carry out an impact assessment based on best available evidence and analyses, and on additional studies as necessary.

That delegated act shall specify its date of application and, where appropriate, any tiered measures or transitional measures or periods.

5. The Commission shall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to supplement this Regulation by setting

out derogations from the prohibition of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listed in Annex VII where it is

appropriat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

(a) health, hygiene and safety reasons ;

(b) damage caused to products as a result of their handling, or detected after products have been returned, which cannot be repaired in a cost-effective manner;

(c) unfitness of products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taking into account, where applicable, Union and national law and technical standards;

(d) non-acceptance of products offered for donation;

(e) unsuitability of products for preparing for reuse or for remanufacturing;

(f) unsaleability of products due to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unterfeit products;

(g) destruction is the option with the least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Those delegated acts may also, where relevant, provide that the prohibition to destroy unsold consumer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the disclosure obligation set out in Article 24 apply to micro and small enterprises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such enterprises could be used to circumvent that prohibition or that obligation. The first delegated act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be adopted by 19 July 2025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의류 제품에 도입하였다.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서는 의류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고, 어떻게 수리할 수 있고,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의류 제품에 붙은 QR 코드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류의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번역본

제9조 디지털 제품 여권

1. 정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위임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및 제 11 조). 디지털 제품 여권의 데이터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2.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행위에 규정된 디지털 상품여권과 관련된 요건

제품군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a) 부록 3에 따라 디지털상품여권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 (b) 사용될 하나 이상의 데이터 캐리어;
- (c) 데이터 캐리어가 제시될 레이아웃 및 그 포지셔닝;
- (d) 디지털 제품 여권이 모델, 배치 또는 품목 레벨에서 설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레벨의 정의
- (e) 디지털 제품 여권이 묶이기 전에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거리매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매매, 고용 또는 고용계약
- (f) 디지털 제품 여권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행위자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 (g) 디지털 제품 여권을 만들거나 디지털 제품 여권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행위자와
데이터 소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 (h) 자료의 도입 또는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
- (i) 디지털 제품 여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특정 제품의 예상 수명.

3. 제2항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a) 가치 사슬의 행위자가 관련 제품 정보에 쉽게 액세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
- (b) 관할 국가 기관에서 제품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가치 사슬을 따라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4. 위원회는 디지털 상품 여권과 관련된 요건을 설정할 때 상품군을 면제할 수 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이 필요한 경우

- (a) 필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디지털 제품 패스पोर्ट의 기술 사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 포함되는 것

- (b) 기타 노조법은 다음과 같은 제품군과 관련된 정보의 디지털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제3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한 요구 사항

1. 디지털 여권은 다음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정보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지속적 고유 제품 식별자와 연결될 것

(b) 데이터 캐리어는 제품, 포장 또는 관련 문서에 물리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따른 제품

(c) 데이터 운송업체 및 고유 제품 식별자는 다음 표준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록 III, 두 번째 단락 또는 조화로운 참조가 있을 때까지 동등한 유럽 또는 국제 표준 표준은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발표됩니다

(d)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형식 및 형식은 적절한 경우 기계가 읽을 수 있고, 구조화되고, 검색이 가능하며, 개방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 명시된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 잠금이 없는 상호 운영 가능한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이 조 및 제11조

(e) 고객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디지털 제품 여권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EU) 제6조 준수 2016/679

(f)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된 데이터는 다음에 명시된 제품 모델, 배치 또는 품목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행위

(g)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필수사항에 따라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과 제11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과 제품 그룹 수준의 특정 액세스 권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위임행위.

위원회는 별표 3 첫 번째 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72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c) 두 번째 단락은 표준을 대체하거나 다른 표준을 추가하여 기술적 및 과학적 진보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 운송업체, 고유 운영자 식별자 및 고유 설비를 사용하는 유럽 또는 국제 표준 식별자는 이 문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다른 연합법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에 특정 데이터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제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위임 행위에 따라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a)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딜러 및 제공자에게 데이터 캐리어 또는 고유 제품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캐리어 또는 고유 제품 식별자를 잠재적인 액세스 가능하게 하는 관련 식별자 제품을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고객

(b) 지점 (a)에 언급된 디지털 사본 또는 웹페이지 링크를 5개 이내의 모든 경우에 즉시 무료로 제공

요청을 받는 근무일 수.

4. 경제 운영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디지털의 백업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제품 여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원문

Article 9

Digital product passport

1.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shall provide that products can only be placed on the market or put into service if
a digital product passport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elegated act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and
with Articles 10 and 11. The data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be accurate, complete and up to date.
2.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laid down in the delegated act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shall, as appropriate for the product groups covered, specify the following :
 - (a) the data to be includ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pursuant to Annex III;
 - (b) one or more data carriers to be used;
 - (c) the layout in which the data carrier is to be presented and its positioning;
 - (d) whether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is to be established at model, batch or item level, and the definition of such levels;
 - (e) the manner in which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is to be made accessible to customers before they are bound by
a contract for sale, hire or hire purchase, including in the event of distance selling;
 - (f) the actors that are to have access to data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and to what data they are to have access;
 - (g) the actors that are to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or update the data in a digital product passport and what data
they may introduce or update;
 - (h) the detailed arrangements for introducing or updating data;
 - (i) the period during which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is to remain available, which shall correspond to at least the
expected lifetime of a specific product.

3.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
 - (a) ensure that actors along the value chain can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product information relevant to them;
 - (b) facilitate the verification of product compliance by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nd
 - (c) improve the traceability of products along the value chain.
4. When setting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the Commission may exempt product groups from the requirement to have a digital product passport where :
 - (a)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are not available in relation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cluded in Articles 10 and 11; or
 - (b) other Union law includes a system for the digital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a product group which the Commission considers achieves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points (a) and (b)

Article 10

Requirements for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1. A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essential requirements
 - (a) it shall be connected through a data carrier to a persistent unique product identifier;
 - (b) the data carrier shall be physically present on the product, its packaging or on documentation accompanying the product, a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delegated act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 (c) the data carrier and the unique product identifier shall comply with one or more of the standards referred to in Annex III, second paragraph, or equivalent European or international standards until the references of harmonised standards ar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d) all data includ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be based on open standards, developed with an interoperable format, and shall be, as appropriate, machine-readable, structured, searchable, and transferable through an open

interoperable data exchange network without vender lock-in,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1;

- (e) personal data relating to customers shall not be stor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without their explicit consent in compliance with Article 6 of Regulation (EU) 2016/679;
- (f) the data includ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refer to the product model, batch or item as specified in the delegated act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 (g) the access to data includ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1 and with the specific access rights at product group level a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delegated act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The Commission is empowered to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to amend Annex III, first paragraph, point (c), and second paragraph in light of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by replacing the standards or adding other European or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which the data carriers, the unique operator identifiers and the unique facility identifiers are to compl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the conditions set out in this Article.

2. Where other Union law requires or allows the inclusion of specific data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those data may be included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pursuant to the applicable delegated act adopted pursuant to Article 4.
3. The economic operator placing the product on the market shall :
 - (a) provide dealers and providers of online marketplaces with a digital copy of the data carrier or the unique product identifier, as relevant, to allow them to make the data carrier or the unique product identifier accessible to potential customers where they cannot physically access the product;
 - (b) provide the digital copy referred to in point (a) or a webpage link free of charge promptly and in any event within five

working days of receiving a request to do so.

4. The economic operator, when placing the product on the market, shall make available a back-up copy of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through a digital product passport service provider.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은 매년 폐기된 의류 제품의 수량과 그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특히 팔리지 않은 소비재의 파괴를 금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제품 폐기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의류 기업이 재고 폐기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몰래 폐기물로 폐기하는 것을 막고,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와 규제 기관은 투명성 요구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류 재고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 의류 폐기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 요구 규정은 모든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6년의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번역본

제24조 미판매 소비자 제품 정보의 공개

1. 미판매 소비자 제품을 직접 폐기하거나 위탁 폐기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 (a) 연간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제품 유형 또는 범주별 수량 및 중량
- (b) 제품 폐기 사유 및, 2제25조 제5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내용
- (c) 다음 각 활동의 시행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폐기 제품의 비율 : 리퍼브 및 재제조를 포함한 재사용 준비,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기타 회수, 지침2008/98/EC 제4조에서 정의한 폐기물 계층에 따른 폐기 작업
- (d)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취할 예정인 조치

사업자는 1항에서 명시한 정보를 최소한 접근이 용이한 자사 웹사이트 페이지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지침2013/34/EU에 제19a조 또는 제29a조에 따라 관리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를 수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상기 정보를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명시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직전 회계연도에 폐기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매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상기

정보 공개 중 첫 번째 공개 내용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첫 전체 회계연도 중에 폐기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을 포괄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30년 7월 19일부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2.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 국가 기관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집행위원회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c)호에 따라 공개된 폐기 제품의 인도 및 수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 그리고 제25조 제5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감면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정보 및 문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공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명시한 정보 공개의 세부사항과 형식을 정한 시행법률을 채택한다. 동 법률은 제품 유형 또는 범주를 명시하고, 해당 정보의 검증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상기 시행법률은 제73조 제3항에 명시한 검토 절차에 따라 채택한다.

상기 시행법률 중 최초 법률은 2025년 7월 19일까지 채택한다.

제26조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에 관한 통합 정보

집행위원회는 2027년 7월 19일까지, 그리고 이후 36개월마다,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에 관한 통합 정보를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게시한다.

- (a)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공개 정보에 근거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제품군별 폐기 발생률
- (b)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로 인한 제품군별 환경 영향 비교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원문

Article 24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unsold consumer products

1. Economic operators that discard unsold consumer products directly or have unsold consumer products discarded on their behalf shall disclose :

- (a) the number and weight of unsold consumer products discarded per year, differentiated per type or category of products;
- (b) the reasons for discarding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relevant derogation under Article 25(5);
- (c) the proportion of discarded products delivered,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to undergo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 preparing for reuse, including refurbishment and remanufacturing, recycling, other recovery including energy recovery, and disposal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hierarchy as defined by Article 4 of Directive 2008/98/EC;
- (d) measures taken and measures plann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Economic operators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in a clear and visible manner at least on an easily accessible page of their website. Economic operators that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ublish the sustainability reporting in their management report pursuant to Article 19a or 29a of Directive 2013/34/EU may also include that information in that sustainability reporting.

Economic operators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on an annual basis and shall include as part of that information the unsold consumer products discarded during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They shall make the information for each year publicly available. That first disclosure shall cover unsold consumer products discarded during the first full financial year during which this Regulation is in force.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micro and small enterprises.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19 July 2030.

2. With the exception of when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to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n the basis of another legal act, the economic operators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 or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provide all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delivery and

reception of the discarded products as disclosed pursuant to paragraph 1, point (c), of this Article, and, where relevant,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a derogation under Article 25(5).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hall be provided in paper or electronic form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3. The Commission shall adopt implementing acts setting out the details and format fo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product types or categories and how such information is to be verified.

Those implementing acts shall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examination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73(3).

Article 26

Consolidated information on the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By 19 July 2027 and every 36 months thereafter,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on its website consolidated information on

the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including the following elements :

- (a) the prevalence of the destruction of specific groups of unsold consumer products per year,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economic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24(1);
- (b) the comparative environmental impacts resulting from 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per product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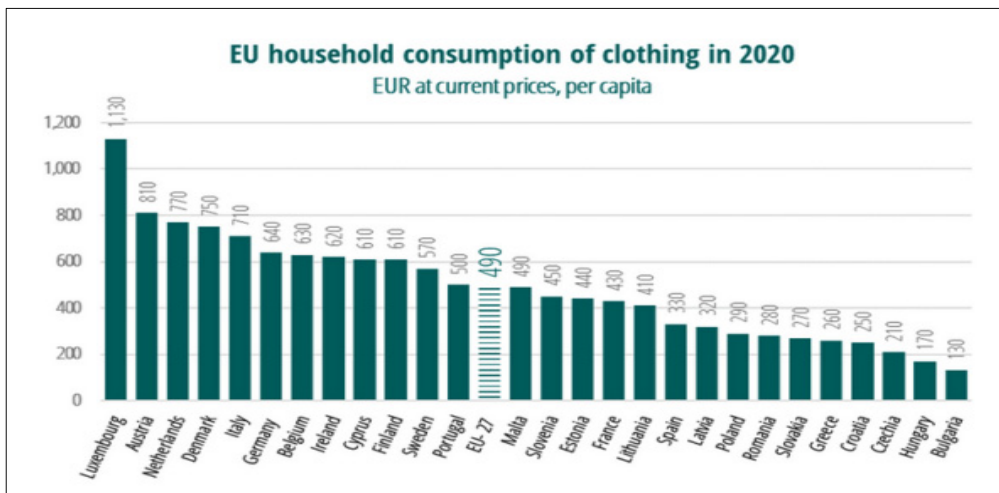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이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도입한 이후, 의류 재고 폐기 문제와 관련된 산업계와 사회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여러 의류 기업들이 의류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코디자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미 프랑스, 스페인 등은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하며 재고 의류의 소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고 의류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활용 및 재사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마. 독일 및 벨기에

1) 독일

독일 의류 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세계에서 세 번째⁶⁰⁾로 크며 2023년 유럽 연합 GDP의 21.6%를 차지했다. 인구 8,340만 명(Destatis, Nov 2024)의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

독일은 2021년 세계 의류 & 신발 시장에서 699억 달러(약 98조원)의 규모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의 자리에 올랐고⁶¹⁾, 2024년 수익은 730억 달러(한화 약 102조 원)에 달한다. 또한 13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German Fashion Council report 2021)⁶²⁾, 2022년 독일인은 의류를 구입하는데에 가구당 평균 760유로(한화 약 112만 원)를 소비했고 이는 EU 평균 630유로(약 93만원)를 넘어선다.⁶³⁾



자료 : EURATEX(The European Apparel and Textile Confederation), Facts & Key Figures 2024.

[그림 II-4] 2022년 유럽연합 가계 소비 의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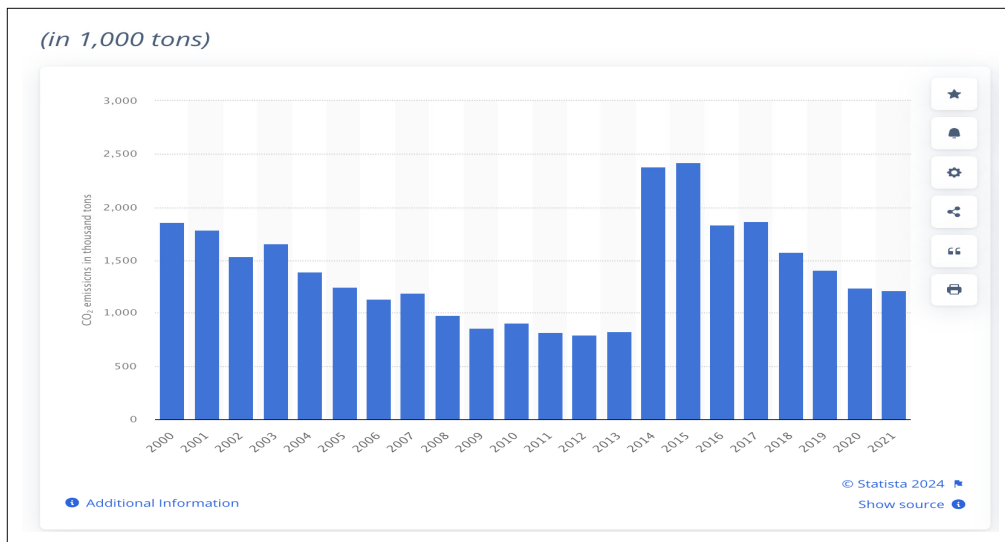
60) Statista(2024), The 20 countries with the largest gross domestic product(GDP) in 2024

61) Fashion United(2022), Global Fashion Industry Statistics (Largest Apparel and Footwear Markets Worldwide 2021)

62) Oxford Economics & Fashion Council Germany(2021), The Status of German Fashion 2021. P6. Executive Summary

63) EURATEX(The European Apparel and Textile Confederation, 2024), Facts & Key Figures 2024. P15

한편, 의류 산업이 독일의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2021년 독일의 섬유와 가죽 제품 제조 분야의 탄소배출량은 1213.87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 최고치에서 점차 조금씩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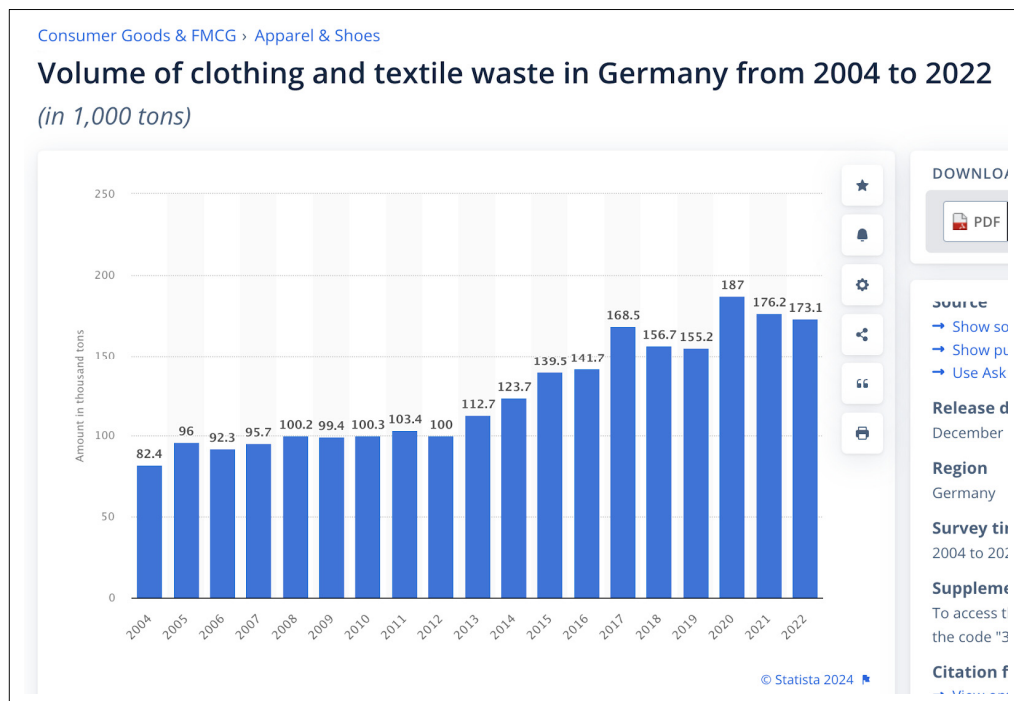


자료 : Statista 2024

[그림 II-5] 2000-2021 독일 섬유, 의류, 가죽 탄소 배출량
(CO₂ emissions from textiles, clothing, leather Germany 2000-2021)

또한, 독일의 섬유 폐기물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에 187,000톤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기물 분리와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는데에 주력하고 있다.⁶⁴⁾

64) Wuppertal Institut (2022. 7. 23) The Circular Economy as a New Narrative for the Textile Industry. P19



자료 : Statista 2024

[그림 II-6] 2004-2022 독일 의류 섬유 폐기물량
(Volume of clothing and textile waste in Germany from 2004 to 2022)

2015년 유럽연합 위원회는 폐기물 관리를 다루는 포괄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⁶⁵⁾을 채택했으며, 독일은 유럽연합의 순환 경제 법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0년 3월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 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섬유 산업과 전자 장비 생산에서 순환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일은 2019년에 이미 연방 교육 연구부 산하의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 도이칠란드(CEID)를 설립하여, 과학 기관, 산업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독일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또한,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65) EUR-Lex (2015), 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66) Holland Circular Hotspot(2022), Circular economy opportunities in Germany

and Development-BMZ)는 섬유 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와 협력하여 순환 경제를 확립하고 있으며⁶⁷⁾,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일의 사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⁶⁸⁾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6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는 2021년 넷제로 독일 보고서에서 섬유제품 생산과 판매 가치 사슬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소비자 행동 장려를 요구하였다.⁶⁹⁾

독일은 미판매 재고 폐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 10월 23일에 개정된 순환경제법(German Circular Economy Law : Kreislaufwirtschaftsgesetz - KrWG)을 통해 과잉 생산, 재고 및 반품 제품의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모든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Obhutspflicht)와 보고의무(Berichtspflicht)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제품 내구성과 사용성 보장 및 폐기처분 방식을 의무로 하고 있다. 특히, 23조 11항에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에는 제품의 사용 적합성이 유지되고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품된 제품 역시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주의 의무를 두고 있어, 판매되지 않은 제품, 즉 재고와 반품된 제품 역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⁷⁰⁾

67)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24. 6. 27),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ircular economy

68)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6. 27), Improving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in the textiles industry

69) Mckinsey & Company(2021), Net-Zero Germany

70) EEB(European Environmental Bureau)(2021. 09), Policy Brief on Prohibiting the Destruction of Unsold Goods. P13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번역본

제23조 제품 책임

- (1) 제조물을 개발, 생산, 가공, 처리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순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제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조물은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물 유통 시 제조물의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며 제조물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제품 책임은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원 효율적이고, 다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 수명이 길고, 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규정에 부합하고 유해성이 없으며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조물의 개발, 생산 및 유통
 2.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플라스틱과 같은 이차 원료를 제조물 생산에 우선적으로 사용
 3. 제조물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물 또는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에서 주요 원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 사용을 절감하고, 제조물에 포함된 주요 원료를 표시
 4. 제조물의 재사용 강화. 특히 재사용 및 수리 시스템 지원
 5.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위험 물질 함량을 줄이고,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조물을 표시
 6. 반납, 재사용, 재활용 및 처리 방안과 의무 그리고 보증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조물에 표시하여 안내
 7. 제조물 및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와 이후 친환경적 재활용 또는 처리
 8.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재정적 책임 또는 재정적·조직적 책임 이행
 9. 폐기물 방지, 재활용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대중에게 제공하며, 특히 분리수거에 관한 요구사항과 환경 내 쓰레기 투기 방지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
 10. 환경 정화 및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의해 유통된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이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과 기타 공공 법인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11. 유통된 제조물에 대한 보호 의무. 특히 제조물 유통 및 회수 또는 반납 과정에서 제조물의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고 제조물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 (3) (1) 및 (2)항에 따른 제품 관리의 맥락에서, 제7조 (4)항에 따른 요건의 비례성 외에도 다른 법률 조항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리 및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연합법 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4) 연방 정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스튜어드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 당사자를 조례로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제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제품 스튜어드십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 23 Produktverantwortung

- (1) Wer Erzeugnisse entwickelt, herstellt, be- oder verarbeitet oder vertreibt, trägt zur Erfüllung der Ziele der Kreislaufwirtschaft die Produktverantwortung. Erzeugnisse sind möglichst so zu gestalten, dass bei ihrer Herstellung und ihrem Gebrauch das Entstehen von Abfällen vermindert wird und sichergestellt ist, dass die nach ihrem Gebrauch entstandenen Abfälle umweltverträglich verwertet oder beseitigt werden. Beim Vertrieb der Erzeugnisse ist dafür zu sorgen, dass deren Gebrauchstauglichkeit erhalten bleibt und diese nicht zu Abfall werden.
- (2) Die Produktverantwortung umfasst insbesondere
 1. die Entwicklung,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Erzeugnissen, die ressourceneffizient, mehrfach verwendbar, technisch langlebig, reparierbar und nach Gebrauch zur ordnungsgemäßen, schadlosen und hochwertigen Verwertung sowie zu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geeignet sind,
 2. den vorrangigen Einsatz von verwertbaren Abfällen oder sekundären Rohstoffen, insbesondere Rezyklaten, bei der Herstellung von Erzeugnissen,
 3. den sparsamen Einsatz von kritischen Rohstoffen und die Kennzeichnung der in den Erzeugnissen enthaltenen kritischen Rohstoffe, um zu verhindern, dass diese Erzeugnisse zu Abfall werden sowie sicherzustellen, dass die kritischen Rohstoffe aus den Erzeugnissen oder den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andenen Abfällen zurückgewonnen werden können,
 4. die Stärkung der Wiederverwendung von Erzeugnissen, insbesondere die Unterstützung von Systemen zur Wiederverwendung und Reparatur,
 5. die Senkung des Gehalts an gefährlichen Stoffen sowie die Kennzeichnung von schadstoffhaltigen Erzeugniss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andenen Abfälle umweltverträglich verwertet oder beseitigt werden,
 6. den Hinweis auf Rückgabe-, Wiederverwendungs-, Verwertungs- und Beseitigungsmöglichkeiten oder -pflichten und Pfandregelungen durch Kennzeichnung der Erzeugnisse,

7. die Rücknahme der Erzeugnisse und der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andenen Abfälle sowie deren nachfolgende umweltverträgliche Verwertung oder Beseitigung,
 8. die Übernahme der finanziellen oder der finanzi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antwortung für die Bewirtschaftung der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andenen Abfälle,
 9. die Information und Beratung der Öffentlichkeit über Möglichkeiten der Vermeidung, Verwertung und Beseitigung von Abfällen, insbesondere über Anforderungen an die Getrennsammlung sowie Maßnahmen zur Verhinderung der Vermüllung der Umwelt,
 10. die Beteiligung an Kosten, die den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n und sonstig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für die Reinigung der Umwelt und die anschließende umweltverträgliche Verwertung und Beseitigung der nach Gebrauch der aus den von einem Hersteller oder Vertreiber in Verkehr gebrachten Erzeugnissen entstandenen Abfälle entstehen sowie
 11. eine Obhutspflicht hinsichtlich der vertriebenen Erzeugnisse, insbesondere die Pflicht, beim Vertrieb der Erzeugnisse, auch im Zusammenhang mit deren Rücknahme oder Rückgabe, dafür zu sorgen, dass die Gebrauchstauglichkeit der Erzeugnisse erhalten bleibt und diese nicht zu Abfall werden.
- (3) Im Rahmen der Produktverantwort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sind neben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r Anforderungen entsprechend § 7 Absatz 4 die sich aus anderen Rechtsvorschriften ergebenden Regelungen zur Produktverantwortung und zum Schutz von Mensch und Umwelt sowie die Festlegungen des Unionsrechts über den freien Warenverkehr zu berücksichtigen.
- (4) Die Bundesregierung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en auf Grund der §§ 24 und 25, welche Verpflichteten die Produktverantwort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wahrzunehmen haben. Sie legt zugleich fest, für welche Erzeugnisse und in welcher Art und Weise die Produktverantwortung wahrzunehmen ist.

순환경제법 제23조 제품 책임에 대한 주의 의무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투명성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물의 유형, 수량, 소재 및 폐기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계획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결과 데이터를 작성하고, 폐기물의 회수 시스템 조직 및 구조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를 고려하여 제품을 적정량 생산하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번역본

제 25조 회수 및 반납 의무 - 재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환경 정화를 위한 비용 부담; 주의 의무에 대한 요건

(1) 제23조에 따른 요건을 정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제68조)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생산자 또는 유통업체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 해당 지역에 전국적인 회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수 또는 폐기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특정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회수 시스템 설치, 회수 시스템 참여, 보증금 부과 또는 기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특정 제품을 회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수 및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
3. 배송 또는 수거 지점 또는 기타 규정된 지점에서 특정 제품을 회수한다.
4.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2019년 6월 5일 이사회의 지침 (EU) 2019/904 부록 E에 따라 생산자 또는 유통업체가 사용 후 시장에 출시한 제품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회수 및 폐기하기 위해 공공 폐기물 관리 기관 및 기타 공법상 법인이 발생하는 비용에 기여하는 경우(OJ L 155, 2019.12.6, 1페이지)
5. 제조자 또는 유통업체가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설립되고 제24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발행된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제품 관리와 관련된 의무를 담당하는 공인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에만 특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6. 특정 제조물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재사용 및 수리 지원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a) 유통된 제조물과 그 특성 및 수량
 - b) 폐기물 회수 및 회수 시스템 참여 여부
 - c) 회수된 제조물 또는 제조물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및 관리 방식
8. 제7호에 명시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관 및 유지하며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9.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특정 제조물에 적합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제조물의 사용과 특히 유형, 수량, 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와 계획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3자가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관할 당국에 제출할지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지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환경경영감사제도(EMAS) 명부에 등록된 기관의 유효한 환경 인증이 필수 보호 의무를 다룬다면, 해당 인증은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23조의 요건을 확정하고, 폐기물 발생자 및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이 순환 경제 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추가 규정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법규 명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집, 회수, 재활용 및 처리, 정보 표시,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제24조제9호에 따른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2. 비용 산정 방법. 특히 비용 산정 시 제조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다.
3. 비용부담자가 제품 책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이나 재정적·조직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특히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사업체 내에서 준비금을 형성하여 이를 입증한다.
4. 비용부담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자체 감독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 a) 비용 부담을 포함한 재정 상황
 - b)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을 해야 하는 데이터의 품질
5. 비용부담자는 제4호에 따른 자체 감독의 점검을 관할 당국이 지정한 전문가나 기관 또는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른 이가 수행하도록 한다.
6. 폐기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회수 시스템에 폐기물을 인계해야 한다.
7. 폐기물 인계 방식에 관한 사항. 폐기물 제공, 수집 및 운반 조치와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위 및 제6호에 명시된 폐기물 소유자의 이송 의무 또한 포함한다.
8. 제20조에 따른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은 폐기물 수집을 위임된 임무로 수행함으로써 회수 과정에 참여하고, 수집한 폐기물을 제1항에 명시된 의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9. 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발적으로 선정된 대리인 임명에서 준수해야 하는 형식과 내용 및 절차
10.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요건. 특히 폐기물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요건
11. 제10호의 폐기물 관리 목표 준수에 관한 데이터와 회수 시스템 조직 및 구조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 25 Anforderungen an Rücknahme- und Rückgabepflichten, Wiederverwendung, Verwertung und die Beseitigung der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andenen Abfälle, Kostenbeteiligungen für die Reinigung der Umwelt – Obhutspflicht

- (1) Zur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nach § 23 wird die Bundesregierung ermächtigt, nach Anhörung der beteiligten Kreise (§ 68)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 bestimmen, dass Hersteller oder Vertreiber
1. bestimmte Erzeugnisse nur bei Eröffnung einer für den jeweiligen Bereich flächendeckenden Rückgabemöglichkeit sowie Sicherstellung der umweltverträglichen Verwertung oder Beseitigung abgeben oder in Verkehr bringen dürfen,
 2. bestimmte Erzeugnisse zurückzunehmen und die Rückgabe sowie die umweltverträgliche Verwertung und Beseitigung durch geeignete Maßnahmen sicherzustellen haben, insbesondere durch die Einrichtung von Rücknahmesystemen, die Beteiligung an Rücknahmesystemen, die Erhebung eines Pfandes oder die Gewährung anderer wirtschaftlicher Anreize,
 3. bestimmte Erzeugnisse an der Abgabe- oder Anfallstelle oder einer anderen vorgeschriebenen Stelle zurückzunehmen haben,
 4. sich an Kosten zu beteiligen haben, die den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n und sonstig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für die Reinigung der Umwelt und die anschließende umweltverträgliche Verwertung und Beseitigung der nach Gebrauch der von einem Hersteller oder Vertreiber in Verkehr gebrachten Erzeugnissen gemäß des Teils E des Anhangs der Richtlinie (EU) 2019/90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5. Juni 2019 über die Verringerung der Auswirkungen bestimmter Kunststoffprodukte auf die Umwelt (ABl. L 155, vom 12.6.2019, S. 1) entstehen,
 5. bestimmte Erzeugnisse nur bei Bestellung eines Bevollmächtigten in Verkehr bringen dürfen, der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niedergelassen ist und für die mit der Produktverantwortung verbundenen Pflichten verantwortlich ist, die sich aus den auf Grund der §§ 24 und 25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ergeben, wenn der Hersteller oder Vertreiber i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niedergelassen ist,
 6. bestimmter Erzeugnisse Systeme zur Förderung der Wiederverwendung und Reparatur zu unterstützen haben,

7. einen Nachweis zu führen haben
 - a) über die in Verkehr gebrachten Erzeugnisse, deren Eigenschaften und Mengen,
 - b) über die Rücknahme von Abfällen und die Beteiligung an Rücknahmesystemen sowie
 - c) über Art, Menge und Bewirtschaftung der zurückgenommenen Erzeugnisse oder der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ehenden Abfälle,
 8. Belege nach Nummer 7 beizubringen, einzubehalten, aufzubewahren oder auf Verlangen vorzuzeigen haben sowie
 9. zur Gewährleistung einer angemessenen Transparenz für bestimmte, unter die Obhutspflicht fallende Erzeugnisse einen Bericht zu erstellen haben, der die Verwendung der Erzeugnisse, insbesondere deren Art, Menge, Verbleib und Entsorgung, sowie die getroffenen und geplanten Maßnahmen zur Umsetzung der Obhutspflicht zum Inhalt hat; es kann auch bestimmt werden, ob und in welcher Weise der Bericht durch Dritte zu überprüfen, der zuständigen Behörde vorzulegen oder in geeigneter Weise zu veröffentlichen ist; die gültige Umwelterklärung einer in das EMAS-Register eingetragenen Organisation erfüllt die Anforderungen an den Bericht, soweit sie die erforderlichen Obhutspflichten adressiert.
- (2) Durch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1 kann zur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nach § 23 sowie zur ergänzenden Festlegung von Pflichten sowohl der Erzeuger und Besitzer von Abfällen als au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 im Rahmen der Kreislaufwirtschaft weiter bestimmt werden,
1. wer die Kosten für die Sammlung, Rücknahme, Verwertung und Beseitigung, die Kennzeichnung, die Datenerhebung und -übermittlung sowie die Beratung und Information nach § 24 Nummer 9 zu tragen hat,
 2. wie die Kosten festgelegt werden, insbesondere, dass bei der Festlegung der Kosten der Lebenszyklus der Erzeugnisse zu berücksichtigen ist,
 3.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n Nachweis darüber zu erbringen hat, dass er über die erforderlichen finanziellen oder finanziellen und organisatorischen Mittel verfügt, um den Verpflichtungen im Rahmen der Produktverantwortung nachzukommen, insbesondere durch Leisten einer Sicherheit oder Bilden betrieblicher Rücklagen,
 4.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 geeignete Eigenkontrolle einzurichten und durchzuführen hat zur Prüfung und Bewertung

- a) seiner Finanzen, einschließlich der Kostenverteilung und
- b) der Qualität der Daten, für die eine Nachweisführung nach Absatz 1 Nummer 7 verordnet wurde,
- 5.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 Prüfung der Eigenkontrolle nach Nummer 4 durch eine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bekannt gegebenen Sachverständigen, eine von dieser Behörde bekannt gegebene Stelle oder eine sonstige Person, die über die erforderliche Fach- und Sachkunde verfügt, durchführen zu lassen hat,
- 6. bestimmter Erzeugnisse Systeme zur Förderung der Wiederverwendung und Reparatur zu unterstützen haben,
- 7. einen Nachweis zu führen haben
 - a) über die in Verkehr gebrachten Erzeugnisse, deren Eigenschaften und Mengen,
 - b) über die Rücknahme von Abfällen und die Beteiligung an Rücknahmesystemen sowie
 - c) über Art, Menge und Bewirtschaftung der zurückgenommenen Erzeugnisse oder der nach Gebrauch der Erzeugnisse entstehenden Abfälle,
- 8. Belege nach Nummer 7 beizubringen, einzubehalten, aufzubewahren oder auf Verlangen vorzuzeigen haben sowie
- 9. zur Gewährleistung einer angemessenen Transparenz für bestimmte, unter die Obhutspflicht fallende Erzeugnisse einen Bericht zu erstellen haben, der die Verwendung der Erzeugnisse, insbesondere deren Art, Menge, Verbleib und Entsorgung, sowie die getroffenen und geplanten Maßnahmen zur Umsetzung der Obhutspflicht zum Inhalt hat; es kann auch bestimmt werden, ob und in welcher Weise der Bericht durch Dritte zu überprüfen, der zuständigen Behörde vorzulegen oder in geeigneter Weise zu veröffentlichen ist; die gültige Umwelterklärung einer in das EMAS-Register eingetragenen Organisation erfüllt die Anforderungen an den Bericht, soweit sie die erforderlichen Obhutspflichten adressiert.
- (2) Durch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1 kann zur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nach § 23 sowie zur ergänzenden Festlegung von Pflichten sowohl der Erzeuger und Besitzer von Abfällen als au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 im Rahmen der Kreislaufwirtschaft weiter bestimmt werden,
 - 1. wer die Kosten für die Sammlung, Rücknahme, Verwertung und Beseitigung,

- die Kennzeichnung, die Datenerhebung und -übermittlung sowie die Beratung und Information nach § 24 Nummer 9 zu tragen hat,
2. wie die Kosten festgelegt werden, insbesondere, dass bei der Festlegung der Kosten der Lebenszyklus der Erzeugnisse zu berücksichtigen ist,
 3.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n Nachweis darüber zu erbringen hat, dass er über die erforderlichen finanziellen oder finanziellen und organisatorischen Mittel verfügt, um den Verpflichtungen im Rahmen der Produktverantwortung nachzukommen, insbesondere durch Leisten einer Sicherheit oder Bilden betrieblicher Rücklagen,
 4.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 geeignete Eigenkontrolle einzurichten und durchzuführen hat zur Prüfung und Bewertung
 - a) seiner Finanzen, einschließlich der Kostenverteilung und
 - b) der Qualität der Daten, für die eine Nachweisführung nach Absatz 1 Nummer 7 verordnet wurde,
 5. dass derjenige, der die Kosten zu tragen hat, eine Prüfung der Eigenkontrolle nach Nummer 4 durch eine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bekannt gegebenen Sachverständigen, eine von dieser Behörde bekannt gegebene Stelle oder eine sonstige Person, die über die erforderliche Fach- und Sachkunde verfügt, durchführen zu lassen hat,
 6. dass die Besitzer von Abfällen diese den nach Absatz 1 verpflichteten Herstellern, Vertreibern oder nach Absatz 1 Nummer 2 eingerichteten Rücknahmesystemen zu überlassen haben,
 7. auf welche Art und Weise die Abfälle überlassen werden, einschließlich der Maßnahmen zum Bereitstellen, Sammeln und Befördern und des jeweils gebotenen Umfangs sowie der Bringpflichten der unter Nummer 6 genannten Besitzer von Abfällen,
 8. dass die öffentlich-rechtlichen Entsorgungsträger im Sinne des § 20 durch Erfassung der Abfälle als ihnen übertragene Aufgabe bei der Rücknahme mitzuwirken und die erfassten Abfälle den nach Absatz 1 Verpflichteten zu überlassen haben,
 9. welche Form, welchen Inhalt und welches Verfahren die Bestellung eines Bevollmächtigten nach Absatz 1 Nummer 5 oder eines freiwillig Bevollmächtigten einzuhalten hat,
 10. welche Anforderungen an die Verwertung eingehalten werden müssen,

- insbesondere durch Festlegen abfallwirtschaftlicher Ziele, und
11. dass Daten über die Einhaltung der abfallwirtschaftlichen Ziele nach Nummer 10 sowie weitere Daten über die Organisation und Struktur der Rücknahmesysteme zu erheben und in geeigneter Weise zu veröffentlichen sind.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1월에 발효된 공급망 기업 실사 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이하 ‘공급망 실사법’이라 한다.)은 기업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현대 노예 제도, 차별 및 환경적 위반을 포함하여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공급망 실사법에서 기업의 주요 의무로는,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책임자 지정, 정기적 위험 분석 실시, 인권 정책 전달, 예방 조치 이행, 위반 사항 해결, 불만 처리 절차 설정, 당국에 실사 결과 데이터 보고 등이 있다. 독일이나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회사는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급망 실사법은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 수집, 저장 및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급망 기업 실사 의무화법』 번역본

제2조 정의

(2) 이 법의 의미 내에서 인권 위험은 사실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금지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할 가능성이 충분한 조건을 의미한다.

9. 유해한 토양 변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유해한 소음 방출 또는 과도한 물소비를 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a) 식품의 보존과 생산을 위한 자연적 기반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 b)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 c) 개인이 위생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이를 파괴하거나
- d)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

10. 개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토지, 숲, 물의 취득, 개발 또는 기타 사용에 있어 불법적인 퇴거 금지와 토지, 숲, 물의 불법적인 점유를 금지한다.

(3) 이 법의 의미 내에서 환경 관련 위험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금지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할 가능성이 충분한 조건을 의미한다.

- 1. 2013년 10월 10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제4조(1) 및 부속서 A파트 I에 따른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 금지(연방법공보 2017 II pp. 610, 611)(미나마타 협약) ;
- 2. 각 제품 및 공정에 대해 협약에 명시된 단계적 폐지일로부터 미나마타협약 제5조(2) 및 부속서 B파트 I의 의미 내에서 제조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 3. 미나마타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은폐기물 처리를 금지하는 행위
- 4.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2001년 5월 23일 스톡홀름협약 제3조(1)(a) 및 부속서 A에 따른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금지(Federal Law Gazette 2002 II pp. 803, 804) (POPs 협약), 잔류성 유기물에 관한 2019년 6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19/1021 버전에서 2005년 5월 6일 결정(Federal Law Gazette 2009 II pp. 1060, 1061)으로 최종수정됨 오염물질(2019년 5월 26일 OJ L 169 pp. 45-77), 2020년 12월 16일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277에 의해 최종 개정됨(2월 23일 OJ L 62 pp. 1-3)
- 5. 제 6조(1)(d)(i)의 조항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 수집, 저장 및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ii) POPs 협약.
- 6. 1989년 3월 22일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제1조 제1항의 의미에 따른 유해폐기물 및 제1조 제2항의 의미에 따른 기타 폐기물의 수출 금지 (Federal Law Gazette 1994 II pp. 2703, 2704) (바젤 협약), 2014년 5월 6일, 1989년 3월 22일 바젤 협약의 부속서를 수정하는 제3조제에 의해 마지막 개정됨(Federal Law Gazette II pp. 306,307), 그리고 폐기물 선적에 관한 2006년 6월 1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013/2006(2006년 7월 12일자 OJL 190 pp. 1-98)의 의미 내에서

(Regulation (EC) No 1013 /2006), 2020년 10월 19일자 유럽위원회 위임 규정 (EU)2020/2174에 의해 최종 개정됨(2020년 12월 22일자 OJ L 433 pp. 11-19)

- a) 해당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바젤 협약 제4조(1)(b))
- b)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수입상태 특정수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바젤협약 11조, 수입국이 해당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바젤 협약 제4조 (1)(c)),
- c) 바젤협약 비당사자(바젤협약 제4조 제5항)
- d) 해당 유해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이 해당 주 또는 다른 곳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으로(제4조 제8항 1문장)

바젤협약);

- 7. 바젤 협약 부속서 VII에 나열된 국가에서 부속서 VII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로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바젤 협약 제4A조, 규정(EC) No 1013/2006 제36조).
- 8. 바젤협약 비당사자로부터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수입 금지(바젤협약 제4조 제5항)

『공급망 기업 실사 의무화법』 원문

§ 2 Begriffsbestimmungen

(1) 생략

- (2) Ein menschenrechtliches Risiko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 Zustand, bei dem aufgrund tatsächlicher Umstände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in Verstoß gegen eines der folgenden Verbote droht :

1~8. 생략

- 9. das Verbot der Herbeiführung eine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 Gewässerverunreinigung, Luftverunreinigung, schädlichen Lärmemission oder eines übermäßigen Wasserverbrauchs, die a) die natürlichen Grundlagen zum Erhalt und der Produktion von Nahrung erheblich beeinträchtigt, b) einer Person den Zugang zu einwandfreiem Trinkwasser verwehrt, c) einer Person den Zugang zu Sanitäreinrichtungen erschwert oder zerstört oder d) die Gesundheit einer Person schädigt;

- 10. das Verbot der widerrechtlichen Zwangsräumung und das Verbot des widerrechtlichen Entzugs von Land, von Wäldern und Gewässern bei dem Erwerb, der Bebauung oder anderweitigen Nutzung von Land, Wäldern und Gewässern, deren Nutzung die Lebensgrundlage einer Person sichert;

- (3) Ein umweltbezogenes Risiko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 Zustand, bei dem auf Grund tatsächlicher Umstände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in

Verstoß gegen eines der folgenden Verbote droht :

1. das Verbot der Herstellung von mit Quecksilber versetzten Produkten gemäß Artikel 4 Absatz 1 und Anlage A Teil I des Übereinkommens von Minamata vom 10. Oktober 2013 über Quecksilber (BGBl. 2017 II S. 610, 611) (Minamata-Übereinkommen);
2. das Verbot der Verwendung von Quecksilber und Quecksilberverbindungen bei Herstellungsprozessen im Sinne des Artikels 5 Absatz 2 und Anlage B Teil I des Minamata-Übereinkommens ab dem für die jeweiligen Produkte und Prozesse im Übereinkommen festgelegten Ausstiegsdatum;
3. das Verbot der Behandlung von Quecksilberabfällen entgegen den Bestimmungen des Artikels 11 Absatz 3 des Minamata-Übereinkommens;
4. das Verbot der Produktion und Verwendung von Chemikalien nach Artikel 3 Absatz 1 Buchstabe a und Anlage A des Stockholmer Übereinkommens vom 23. Mai 2001 über persistente organische Schadstoffe (BGBl. 2002 II S. 803, 804) (POPs-Übereinkommen), zuletzt geändert durch den Beschluss vom 6. Mai 2005 (BGBl. 2009 II S. 1060, 1061), in der Fassung der Verordnung (EU) 2019/102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über persistente organische Schadstoffe (ABl. L 169 vom 26.5.2019, S. 45), die zuletzt durch die Delegierte Verordnung (EU) 2021/277 der Kommission vom 16. Dezember 2020 (ABl. L 62 vom 23.2.2021, S. 1) geändert worden ist;
5. das Verbot der nicht umweltgerechten Handhabung, Sammlung, Lager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nach den Regelungen, die in der anwendbaren Rechtsordnung nach den Maßgaben des Artikels 6 Absatz 1 Buchstabe d Ziffer i und ii des POPs-Übereinkommens gelten;
6. das Verbot der Ausfuhr gefährlicher Abfälle im Sinne des Artikel 1 Absatz 1 und anderer Abfälle im Sinne des Artikel 1 Absatz 2 des Basler Übereinkommens über die Kontrolle der grenzüberschreitenden Verbringung gefährlicher Abfälle und ihrer Entsorgung vom 22. März 1989 (BGBl. 1994 II S. 2703, 2704) (Basler Übereinkommen), zuletzt geändert durch die Dritte Verordnung zur Änderung von Anlagen zum Basler Übereinkommen vom 22. März 1989 vom 6. Mai 2014 (BGBl. II S. 306, 307), und im Sinne der Verordnung (EG) Nr. 1013/2006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4. Juni 2006 über die Verbringung von Abfällen (ABl. L 190 vom 12.7.2006, S. 1) (Verordnung (EG) Nr. 1013/2006), die zuletzt durch die Delegierte Verordnung (EU) 2020/2174

der Kommission vom 19. Oktober 2020 (ABl. L 433 vom 22.12.2020, S. 11) geändert worden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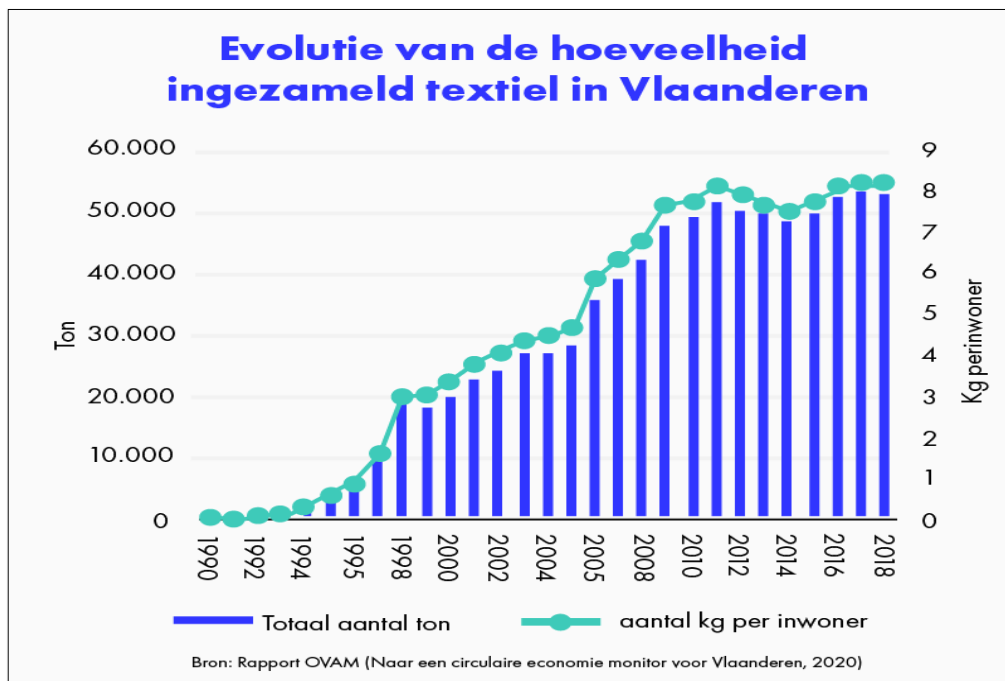
- a) in eine Vertragspartei, die die Einfuhr solcher gefährlichen und anderer Abfälle verboten hat (Artikel 4 Absatz 1 Buchstabe b des Basler Übereinkommens),
 - b) in einen Einfuhrstaat im Sinne des Artikel 2 Nummer 11 des Basler Übereinkommens, der nicht seine schriftliche Einwilligung zu der bestimmten Einfuhr gegeben hat, wenn dieser Einfuhrstaat die Einfuhr dieser gefährlichen Abfälle nicht verboten hat (Artikel 4 Absatz 1 Buchstabe c des Basler Übereinkommens),
 - c) in eine Nichtvertragspartei des Basler Übereinkommens (Artikel 4 Absatz 5 des Basler Übereinkommens),
 - d) in einen Einfuhrstaat, wenn solche gefährlichen Abfälle oder andere Abfälle in diesem Staat oder anderswo nicht umweltgerecht behandelt werden (Artikel 4 Absatz 8 Satz 1 des Basler Übereinkommens);
7. das Verbot der Ausfuhr gefährlicher Abfälle von in Anlage VII des Basler Übereinkommens aufgeführten Staaten in Staaten, die nicht in Anlage VII aufgeführt sind (Artikel 4A des Basler Übereinkommens, Artikel 36 der Verordnung (EG) Nr. 1013/2006) sowie
8. das Verbot der Einfuhr gefährlicher Abfälle und anderer Abfälle aus einer Nichtvertragspartei des Basler Übereinkommens (Artikel 4 Absatz 5 des Basler Übereinkommens).

2) 벨기에

2023년 IBISWorld 통계에 따르면, 벨기에의 의류 리테일 산업은 유럽에서 7위를 차지했다. 벨기에의 의류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에 93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로 추산되었으며, 2024년에는 10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성장률은 1.71%(CAGR 2024-2029)로 예상된다.⁷¹⁾

OVAM(Public Waste Agency of Flanders, 플랑드르 공공 폐기물 처리 기관)에 따르면, 벨기에인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14.8kg의 옷을 버린다. 2018년에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만 53,643톤의 직물 폐기물을 수거했고, 이는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71) statista(2024), Apparel - Belgium



자료 : OVAM(Public Waste Agency of Flanders)보고서, 2020

[그림 II-7] 벨기에 플랑드르 섬유 폐기물량

2018년까지 벨기에의 이러한 섬유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 즉, 재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벨기에 무역 및 서비스 연합, Comeos에 따르면, 2019년까지 벨기에에서는 매년 1억 유로 상당의 팔리지 않은 비식품 상품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빈곤층 대상 비식품 기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이후 재고 폐기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9년 4월 7일 - 빈곤층 대상 비식품 기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번역본**

벨기에 국왕 필리프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에게 인사를 전한다.

벨기에 하원은 아래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국왕은 이를 승인하는 바이다.

제1조. 본 법률은 헌법 제74조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2018년 7월 3일자 법률에 의해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 제 2호⁷²⁾에 c)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식품류 생필품을 자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단, 해당 물품은 내구제가 아니어야 하며,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 순환구조의 어느 단계에서도 최초 판매조건으로 거래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제3항 중 “제1항제2호b)”를 “제1항제2호b) 및 제1항제2호c)”로 한다.

이 법을 공포하며, 국새를 날인하고 벨기에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9년 4월 7일 - 빈곤층 대상 비식품 기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원문**

7 AVRIL 2019. – Loi modifiant le Code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n vue d'exempter de la T.V.A. les dons de biens non alimentaires aux plus démunis (1)

PHILIPPE, Roi des Belges, A tous, présents et à venir, Salut.

La Chambre des représentants a adopté et Nous sanctionnons ce qui suit :

Article 1er. La présente loi règle une matière visée à l'article 74 de la Constitution.

Art. 2. A l'article 12, §1er, du Code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modifié en dernier lieu par la loi du 30 juillet 2018, sont apportées les modifications suivantes : 1. l'alinéa 1er, 2°, est complété par le c) rédigé comme suit : "c) la remise à des fins caritatives de biens non alimentaires de première nécessité, autres que les biens pouvant être utilisés de manière durable dont les caractéristiques intrinsèques ne permettent plus, à quelque stade du circuit économique que ce soit, qu'ils soient vendus dans les conditions initiales de commercialisation;"

2. à l'alinéa 3, les mots "à l'alinéa 1er, 2°, b)"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à l'alinéa

1er, 2°, b), et à l'alinéa 1er, 2°, c).".

Promulguons la présente loi, ordonnons qu'elle soit revêtue du sceau de l'Etat et publiée par le Moniteur belge.

Donné à Bruxelles, le 7 avril 2019.

PHILIPPE Par le Roi : Le Vice-Premier Ministre et Ministre des Finances, A. DE CROO Scellé du sceau de l'Etat : Le Ministre de la Justice, K. GEENS _____ Note
(1) Chambre des représentants (www.lachambre.be) Documents : K54-3559 Compte rendu intégral : 28 mars 2019

많은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여전히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은 재고를 기부하기보다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를 선택한다. 2019년 4월 7일 벨기에는 부가가치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류 재고의 기부와 관련된 이러한 경제적 장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개정법은 부가세 감면을 식품에서 특정 필수 비식품까지 자선 기부를 확대한 것이고, 재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선 목적의 기부를 간소화했다. 현재 벨기에 의류 제품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21%이다. 현재까지 본 개정법으로 인한 정량적 효과와 관련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다.⁷³⁾

그러나 재사용, 수리, 수선, 재활용 비정부기구인 RREUSE에 따르면, 브랜드 매장이 미판매 재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미판매 상품의 예상 총 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⁷⁴⁾

72) “과세 대상자가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해 사업에서 재산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제거는 제외된다. [원문] le prélèvement par un assujetti d'un bien de son entreprise pour le transmettre à titre gratuit, lorsque ce bien ou les éléments qui le composent ont ouvert droit à une déduction complète ou partielle de la taxe à l'exception des prélèvements qui sont effectués en vue de : a) la remise des échantillons commerciaux ou des cadeaux commerciaux de faible valeur;”

https://etaamb.openjustice.be/fr/loi-du-30-juillet-2018_n2018040549.html

73) 브룩셀타임즈(2019.03.19), 팔리지 않은 비식품 기부는 이제 VAT가 면제됩니다.

74) 유럽환경청(EEA) (2024.03.04), 유럽의 순환 경제 속 반품 및 미판매 섬유의 양과 폐기량 (Volumes and destruction of returned and unsold textiles in Europe's circular economy)

바. 기타

1) 미국

가) 연방법 : Americas Act

Americas Act는 2024년 3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미국 상원의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⁷⁵⁾. 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섬유 및 의류산업을 미국 또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에 이전하거나, 이미 본사를 둔 섬유 및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산업과 그 공급망을 현대화하거나 확대(expand or modernize)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의 내용 중 EU 행동목표와 관련된 것은 8항(의류 재사용, 수선을 포함한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에 인센티브 제공)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Textiles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Section 232)과 세제혜택(Section 234)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법 번역본

제3장 섬유 및 의류 (Chapter 3 Textile and Apparel Grant Program)

Section 232 섬유제품(textiles) Reuse and Recycling Programs

(b) 미국 재무부(Secretary of Treasury)는 본 법안 제301조에 따라 섬유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Re-Shoring and Near-Shoring Account에서 관련 보조금 또는 대출(grants or loans) 최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c) 미국 상무부(Secretary of Commerce)는 대상제품(섬유제품 또는 의류)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목적을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운영할 수 있다.

제조시설(facility)의 신설, 확장, 또는 개조하거나, 제품의 수집 및 운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낮은(low-carbon emission) 교통기관을 제공

필요한 구성요소(components), 화학품/용매(chemicals, solvents), 또는 기계장치(machinery) 공급

본 법안 제301조에 따라 Re-Shoring and Near-Shoring Account에서 30억 달러를 자금지원(Funding)하고, 100억 달러를 대출(Loan)할 수 있다.

75) 미국 의회(2024. 3. 6.), S. 3878 - 118th Congress (2023-2024), 118th Cong. (2023)

Section 233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

미국 관세청장(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 영속적인 의류 제조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급망 실사 등을 실행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찰단을 파견할 수 있다.

Section 234 Tax Benefits for Apparel and Home Textile Products

본 법안에 부합하는 국가들에서 생산한 의류의 수입, 섬유제품의 수출, 국내 의류 생산활동에 기인한 수입, 의류의 재사용 및 재활용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을 개정하여, Section 139J, 139K, 251, 199B등을 신설함 : 법인소득세를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연방법 원문

SEC. 232. Textile reuse and recycling programs.

- (b) Priority access to grants and loans for textile reuse and recycling.—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give priority access to grants or loans of amounts under the Re-Shoring and Near-Shoring Account established under section 301 for persons seeking to carry out programs to reuse or recycle covered products.
- (c) Program for manufacturing support and provision of components and machinery.—
 - (1) IN GENERAL.—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establish a program under which the Secretary provides grants and loans for the purpose of—
 - (A) establishing new or expanding or retrofitting existing facilities and providing low-carbon emissions transportation for collection, drop off or mail back, sorting, pre-processing, reuse, or recycling of covered products; and
 - (B) providing components, chemicals, solvents, or machinery necessary for the transportation, collection, mail back, sorting, pre-processing, reuse, or recycling of covered products.
 - (2) FUNDING.—
 - (A)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There i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from the Re-shoring and Near-shoring Account established under section 301, \$3,000,000,000 to carry out the program under paragraph (1).
 - (B) LOANS.—Of the amounts available under the lending authority under section 212(a)(1), \$10,000,000,000 shall be available for loans under the program under paragraph (1).

SEC. 234. Tax benefits for apparel and home textile products.

(a) Exclusion of income from sales of certain products.—

(1) IN GENERAL.—Part III of subchapter B of chapter 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section 139I the following new sections :

나) 메사추세츠 주 환경법안 (310 CMR 19.017) – Disposal Ban Regulations

메사추세츠주 정부의 환경당국(Massachusett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 규율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Solid Waste Facility Regulations)으로, 1990년대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이 중 섬유 및 의류 폐기물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22년 11월이다.

본 법안은 310 CMR (Code of Massachusetts Regulations) 19.017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검토하면,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폐기 시 궁극적으로 매립(Landfill) 또는 소각(incineration) 방식에 의한 폐기를 금지하고, 섬유 및 의류의 재사용(활용) 또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sustainable waste management)를 유도하는 데 있다.

본 법안 발의 후 주민 공청회 등에서 등록된 질의사항에 대한 주 정부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2021년 10월 15일자 보고서를 보면, 주 정부는 (1) 섬유제품(textiles)을 수거하여 재활용 시설로 보내는 경우, 당해 의류 제품의 내재가치로 인해 단순 폐기를 할 경우 대비 각 지역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특히 매트리스의 경우 재활용 비용(\$20-100 per unit)이 폐기비용(\$50 per unit)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2) 매트리스의 처리 및 재활용의 경우, 2022년 11월 1일까지 주 내 처리용량이 연간 47만 개로 예상하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인프라의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3) 특히 폐기의류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담당부서(MassDEP's Reduce & Reuse Workgroup)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⁷⁶⁾

76) MassDEP(2021. 10), Summary of and Response to Comments on Draft Amendment to 310 CMR 19.017 – Waste Ban Regulations, Regulatory Authority, October 15, 2021 at p.4-6.

주 환경당국에 따르면, 본 법의 실시 전 메사추세츠 주 내에서만 연간 15%(4만 톤)의 섬유제품(textiles)이 재활용(recovery)되고 나머지 85%이 매립되거나 소각되었다고 한다.⁷⁷⁾ 2022년 이후, 메사추세츠 주에서 의류 폐기물 수거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 관할지역 내 사업체(Vendors)가 수거한 양이 2022년 대비 7% 정도 증가(43,605톤에서 46,455톤)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의류 폐기물 수거량은 1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032.88톤에서 7,988.87톤). 특히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⁷⁸⁾ 주 환경당국은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의류, 신발, 가정 내 직물제품 등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Beyond the Bin”이라는 사이트⁷⁹⁾를 통해 재활용업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 환경법안 (310 CMR 19.017) 번역본

의류를 그 처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쓰레기로 지정함 (310 CMR 19.017)

정의 [19.006]

Textile : means clothing, footwear, bedding, towels, curtains, fabric, and similar products, except for textiles that are contaminated with mold, bodily fluids, insects, oil, or hazardous substances.

목적 [19.017(1)]

정부는 아래의 경우, 폐기의류(Textile)이 본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쓰레기(solid waste)로 분류됨을 폐기가 제한되는 쓰레기로 지정하여, 그 처리(disposal), 처리를 위한 이전(transfer for disposal)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 처리가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때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가 폐기의류(물) 처리 시설의 가동연한(useful life), 처리능력(capacity), 등급(class of facility)의 연장(extension),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재사용, 폐기물의 감소 또는 재활용을 촉진할 때

77) MassDEP(2024. 5), Fact Sheet : Used Textiles: A Valuable Resource (updated May 2024)

78) Mass DEP(2024. 9), Textiles by the Numbers,

79) Recycle Smart 웹사이트

다) 캘리포니아 주법 (Senate Bill No. 707) 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

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 of 2024는 2024년 9월 11일 제정되어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같은 달 28일 공포하였다. 본 법령은 『쓰레기(Solid Waste) 처리에 관한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 Chapter 20.5 to Part 3 of Division 30)』에 포섭되어, 42984절(Section)에 추가되었다.

본 법령은 섬유/의류제품을 포함한 대상제품(Covered Products)의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제품 생산자(Producer)들로 하여금 본 법의 목적을 직접 이행하도록 주체적 지위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EU행동목표 중 5항(EPR)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6항(미세플라스틱 예방); 7항(섬유/의류 폐기물의 수출 제한); 8항(의류의 재사용, 수선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본 법안을 발의한 Josh Newman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1) 패션산업은 전 지구적으로 탄소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단은 분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메탄 가스를 방출할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패스트 패션” 현상으로 인해 낮은 비용으로 낮은 퀄리티를 가진 의류를 빠르게 생산, 마케팅, 판매하는 거대 유통업자들로 인해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본 법안의 목적이 생산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establishing an EPR program)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3) 본 법안이 업사이클링(단순히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에 디자인 등을 가미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재활용 잠재력을 각성시키고, 섬유/의류 제품의 수선 및 재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 지속 가능한 시장에 맞춘 순환적 산업구조로 섬유/의류산업을 개편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⁸⁰⁾

본 법안으로 인해 기존 캘리포니아 주의 EPR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된다. 즉, 이 법안의 제정 전까지 5개의 EPR Program이 주 전체에 걸쳐 시행 중이었으며(페인트, 카펫, 매트리스, 의약품 및 폐주사기, 플라스틱 포장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⁸¹⁾, 이번 법안이

80) Senate Judiciary Committee(2023.04.25.), Regular Session, 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 of 2023.

81) Sen. Environmental Quality Comm.(2023.03.20.), Analysis of SB 707 (2023-24 reg. sess.) at p.4

의류(apparel), 원단(textile), 또는 직물제품(textile articles - bed sheets, curtains, etc.)를 추가하게 되었다.⁸²⁾ 또한 원단 폐기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원단(의류 또는 직물제품 - 침구, 커튼 등)은 2018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 중 6번째에 위치함.
- ② 2018년, 캘리포니아 주는 120만 톤 분량의 원단을 폐기하였으며, 이는 주 전체 폐기물의 3%에 달함.
- ③ 원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2021년 기준 7천만 불 이상의 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④ 원단 및 의류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6-8%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17억 톤에 달함. CalRecycle⁸³⁾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원단 폐기물의 95%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recovery rate는 미국 기준 15%에 그치고, 남은 85%는 매립장 또는 소각로로 보내지고 있다.⁸⁴⁾

82) Id. at p.4-5

83) 폐기물 관리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 법(the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ct of 1989, IWMA)에 따라 설립된 본 법의 주무관청인 the Dep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의 약자이다.

84) Sen. Judiciary Comm.(2023.04.25), 2023-24 reg. sess.

본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⁸⁵⁾

『캘리포니아 주법』 (Senate Bill No. 707) 번역본

제2조 Producers (생산자들)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는 규모가 다양한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섬유/의류제품(대상제품)의 수집, 분류, 수선, 재사용, 또는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당연직 구성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생산자들은 2026년 7월 1일까지 주 정부에서 승인한 PRO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제3조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s (생산자책임조직)

PRO는 주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한 후 이행계획(Producer Responsibility Plan)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대상으로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섬유/의류제품에의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요평가(Needs Assessment)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평가는 매5년마다 갱신합니다. PRO는 수요평가 소요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2027년 3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수요평가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 평가결과를 화신하여야 합니다. [이하 중략] 주 정부로부터 이행계획(Plan)을 승인받은 PRO는 그 구성원인 개별 생산자들이 이행계획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PRO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중인 생산자로부터 분기별 분담금 납부, 장부 및 관련 정보의 취합 등에 있어서 미납, 누락, 오기 등을 정정하게 된 때 30일 내 주 정부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42984.7)

제4조 Producer Responsibility Plan for Covered Products (대상제품에 대한 생산자 이행계획)

PRO는 본 법 제2조에 관한 하위법령(시행령 등)이 발효한 뒤 12개월 내에 주 정부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섬유/의류 폐기물(대상제품)의 수집, 운송, 수선, 분류, 재활용, 그리고 대상제품의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계획(이행계획)을 개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하 중략] 생산자는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또는 유통된 대상제품의 PRO 이행계획에 관한 Section 42984.10(c)에서 정한 업적 평가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32년 3월 1일까지 Section 42984.19에 따라 주 정부가 도입한 업적 평가기준(Performance Standard)를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42984.11)

85) 원문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707
에서 확인 가능

2) 일본

가) 일본 의류산업 관련 제도

(1) 재판매/재활용 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일본은 의류산업을 특정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⁸⁶⁾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업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특히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나 재활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설비도입에 대한 한시적인, 무이자대출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번역본

부칙 제초

(국가의 무이자 대출 등)

제2조 국가는 당분간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재생자원 또는 재생부품을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주식의 매입수입 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당해 지방 공공 단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지방 공공 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국가의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전항 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방법, 상환기한의 상환 기타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 공공 단체에 대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대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보조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상환시에 대출금의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실시한다.

5 지방 공공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은 무이자 대부금에 대해서, 제2항 및 제3항의

86) e-GOV 법령검색(2018. 4.), 「資源有効利用促進法」

규정에 근거해 정해진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을 실시한 경우(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전항 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은, 해당 상환 기한의 도래시에 행해진 것으로 본다 .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원문

附 則 抄

国の無利子貸付け等)

第二条国は、当分の間、地方公共団体に対し、再生資源又は再生部品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資源の有効な利用を促進するための施設を整備する事業で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の株式の売払収入の活用による社会資本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昭和六十二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該当するものにつき、当該地方公共団体が自ら行う場合にあってはその要する費用に充てる資金の一部を、民間事業者が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民間事業者に対し当該地方公共団体が補助する費用に充てる資金の一部を、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無利子で貸し付けることができる。

2前項の国の貸付金の償還期間は、五年（二年以内の据置期間を含む。）以内で政令で定める期間とする。

3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規定による貸付金の償還方法、償還期限の繰上げその他償還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4国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地方公共団体に対し貸付けを行った場合には、当該貸付けの対象である事業について、当該貸付金に相当する金額の補助を行うものとし、当該補助については、当該貸付金の償還時において、当該貸付金の償還金に相当する金額を交付す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5地方公共団体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貸付けを受けた無利子貸付金について、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定められる償還期限を繰り上げて償還を行った場合（政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償還は、当該償還期限の到来時に行われたものとなす。

또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⁸⁷⁾에 따라 의류산업을 포함한 기업이 순환형 비즈니스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이에 대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환경제 촉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환경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사업 촉진법(저탄소투자 촉진법)』⁸⁸⁾도 살펴 볼 수 있다. 온실가스 절감이나 에너지

87) 환경성(2018. 06),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画」

88) e-GOV 법령검색(2022. 6.),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효율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으로 의류산업에서 순환형 경제를 촉진하는 활동과 연관되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사업 재구조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⁸⁹⁾

(2) 일본 의류산업기업의 미판매 재고 보유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2024년 6월, 경제산업성 제조업국 생활제품과에서는 『섬유어패럴 산업에서의 친환경⁹⁰⁾ 정보공시 가이드라인⁹¹⁾』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 일본의 섬유산업기업은 해외 거래처에서 친환경 정보 제공을 요구 받고 있어서, 이에 따라 일본 국내 의류 기업 등이 친환경 정보의 공시에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익히고 소비자의 의식 제고와 행동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정보 공시를 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섬유제품의 자원순환시스템 검토회를 통해 의류 기업 등이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확보 및 정보공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검토할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② 정보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입장 : 친환경 정보 공시는 기업의 그린워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i 기업의 친환경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방침의 책정, ii방침에 기반한 수치목표의 설정하고 있음, iii수치목표달성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음.
- ③ 가이드라인에는 정보공개가 기대되는 ix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판매 제품의 폐기량이 포함되어 있음 : i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 ii 제조공정에서의 물사용량; iii 친환경소재원료의 사용; iv 사용, 폐기에 관한 환경 부담; v 화학물질 사용량; vi 판매제품의 폐기량(섬유제품의 제조기업의 폐기량 -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단 부스러기 및 잔사 등과 의류기업의 판매제품의 폐기량에 대해 별도로 제시); vii 회수한 의류품의 처분방법; viii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조치; ix 기타 친환경 관련 조치

89) 기업이 사업전환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나 순환형 사업모델로 전환한 의류기업에서도 활용가능한 여지가 있다. 본래는 코로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입된 보조금이나 재활용설비의 도입이나 재생소재의 사용에 의한 상품의 제조 등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90) 일본 경제성에서 '환경배려'라고 표현한 내용을 모두 '친환경'으로 번역하였다.

91) 経済産業省(2024.06), 「繊維・アパレル産業における環境配慮情報開示ガイドライン」

- ④ 정보공개 방법으로 통일된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지속가능보고서 형태를 추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
- ⑤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국내 기업 중 친환경 정보 공시의 모범 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나) 일본 내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 개선 논의 동향

(1) 정부 정책 동향

2024년 3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활제품과에서는 『섬유제품의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⁹²⁾』을 발표하였다.

섬유제품에 대한 친환경 사항에 대한 표시 규제 및 평가 방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속가능성’이나 ‘친환경’ 등의 표시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에서는 섬유제품의 친환경 설계와 관련된 규제가 법제화되고 있는 바, 섬유제품의 친환경설계 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경제산업성은 2022년 5월, 「2030년을 향한 섬유산업의 비전」을 발표⁹³⁾하였다. 이후 2023년 1월, 「섬유제품의 자원순환 시스템 검토회」가 구성되었는데, 교수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 소비자청과 산업계 협회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활제품과와 환경성의 패션과 환경 TF가 사무국으로 참가하였다. 2023년 9월 21일에 제7회 검토회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섬유제품의 자원순환 시스템 검토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⁹⁴⁾

친환경설계 항목은 「섬유제품 친환경설계에 관한 사례집」⁹⁵⁾, 설문조사, 유럽의 성능 요구항목 및 정보요구항목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환경 부담이 적은 원재료의 사용
- 온실가스 배출억제, 에너지 절약
- 안전성 배려
- 수자원 배려

92) 経済産業省「繊維製品の環境配慮設計ガイドライン」(2024年 3月)

93) 経済産業省「2030年に向けた繊維産業の展望(繊維ビジョン)」(2022年5月18日)

94) 경제산업성(2023.09), 홈페이지

95) 経済産業省「環境配慮設計の事例集」(2023.04)

- 폐기물 억제
- 포장재 억제
- 섬유찌꺼기 발생억제
- 장기사용
- 수선, 재활용 서비스의 활용
- 재활용 용이한 설계
- 섬유제품의 재활용

가이드라인은 JISQ62430:2022(친환경설계1원칙, 요구사항 및 수속) (IEC62430:2019)에 기반하여 국내 섬유제품 등 사업자가 친환경설계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후 가이드라인 보급을 사업자와 소비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해외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의 규격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업 동향

Japan Sustainable Fashion Alliance(JSFA) : 2020년 10월부터 환경성의 요청에 따라 업계를 대표하는 섬유메이커, 상사, 소매, 재활용 등에 종사하는 11개 기업이 지속가능한 패션산업구축을 위하여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설립하였다.⁹⁶⁾

적정량 생산, 적정량 매입, 순환 이용을 통한 패션 로스 제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JSFA에서는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등에도 패션 산업에 대한 정책제언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 형성에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⁹⁷⁾

3) 호주

호주는 앞선 국가와 비교하여 의류 산업이 크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호주 패션 협회(Australian fashion council)⁹⁸⁾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의류 및 섬유 산업은 호주에서 270억 달러의 경제적

96) ファッション・繊維企業11社、「ジャパンサステナブルファッションアライアンス」を創設。ファッションロスゼロを目指す (2021. 8. 26)

97) JSFA、「ファッション産業におけるサステナビリティ推進に向けた政策提言書」を経産省らに提出 (2024. 8. 19)

98) 호주패션 협회 홈페이지

기여를 하였고, 수출액은 72억 달러이며, 산업 종사자는 약 50만 명에 달한다. 한편 2023년 기준 약 222,000톤의 의류 폐기물이 매립되고, 의류 폐기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의류 폐기물 문제는 호주에서도 중요한 해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의류 재고 폐기 문제가 심각한 환경적 도전 과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호주 정부는 아직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의류 재고 폐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National Waste Policy(국가 폐기물 정책)을 통해 폐기물 감소를 장려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의류와 같은 섬유 폐기물도 포함하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호주 연방 환경부 장관 Tanya Plibersek은 2023년,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⁹⁹⁾. 호주 정부는 1차적으로 의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하도록 장려하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호주의 의류 기업들은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의류 기업들은 호주 의류 협회(Australian Fashion Council, AFC)를 설립하였고,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 책임을 지기 위해 Seamless Clothing Stewardship Scheme(원활한 의류 관리 계획)¹⁰⁰⁾을 도입했다. 위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의류의 자원순환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류의 재사용, 수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의류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eamless Clothing Stewardship Scheme(원활한 의류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디자인 혁신 : 의류가 더 내구성 있고 재활용 가능하게 제작되도록 장려하며,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수리, 재사용, 재제작, 대여 등)을 확산.
- ② 의류 수거 및 분류 시스템 확대 : 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착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거 및 분류 시스템 구축.
- ③ 시민 행동 변화 : 의류 구매, 사용,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99) Ragtrader 기사, Christopher Kelly(2024.2.22.) The fashion industry is on a watch list, Tanya Plibersek says

100) Seamless Clothing Stewardship Scheme(원활한 의류 관리 계획)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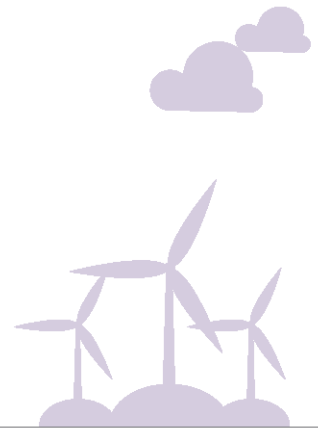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④ 기업의 책임 강화 : 의류 브랜드가 생산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품당 4센트의 부담금(\$0.4c per item)을 납부하게끔 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및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BIG W, David Jones 등 호주의 의류 대기업이 원활한 의류 관리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의류 협회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20,000톤 이상의 의류가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기업이 의류 재고를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고 관리 및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호주 정부는 의류 재고 폐기를 줄이기 위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해 프랑스를 포함한 9개의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크게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¹⁾

〈표 III-1〉 4가지 유형의 각국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제도

제도 구분	국가	근거 법령	제도 설명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의무 부과	프랑스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	- 판매용 비식품류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수범대상 - 재사용 : '사회공익연대기업'으로 인가를 받은 비근퇴치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필요한 생필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 - 재활용 : 법령에서 명시한 처리 방법의 순서를 준수하여 미판매 제품을 재생 이용 또는 재활용 - 관리의무 부과 : 미판매 제품의 보관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관리하여야하고, 관리 의무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스페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 토양에 관한 법률 (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para una economía circular)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판매 섬유 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부과 - 2025년 1월 1일까지 별도의 섬유 수거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 2035년까지 섬유를 포함한 도시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최대 65%까지로 설정
	스코틀랜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Scotland) Act 2024], 스코틀랜드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Scotland Act 2009) 제 78조	- 미판매 소비자재 폐기를 금지하거나 제한 - 이때 소비자재란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소비하도록 의도된 상품 중 식품을 제외한 것으로 섬유 제품이 포함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미판매 제품의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 미판매 재고 제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을 막도록 규정함
	유럽연합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ESPR))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를 금지함

101) 일본과 호주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협회를 조직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법제도에 기반한 내용은 아니므로 표로 정리하는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제도 구분	국가	근거 법령	제도 설명
재고 보유 공시 의무 등 기타 의무 부과	유럽연합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의류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하여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도록 함 - 의류 제품 특히 재고의 폐기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과함
	독일	순환경제법 (German Circular Economy Law : Kreislaufwirtschaftsgesetz - KrWG)	- 제조물을 개발, 생산, 가공, 처리하거나 유통하는 자 다음의 주의의무와 공개의무를 부담함 - 주의의무 : 제조물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제조물 유통 시 제조물의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며 제조물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공개의무 : 제조물의 유형, 수량, 소재 및 폐기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계획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목표준수 여부에 관한 결과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함. 또한, 폐기물의 회수 시스템 조직 및 구조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함
	미국 메사 추세츠주	메사추세츠 주 환경법안 (310 CMR 19.017)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 (Solid Waste Facility Regulations)	다음의 경우, 섬유/의류 제품의 폐기시 매립 또는 소각을 금지하고, 재사용(활용) 또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유도함. -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ii) - 폐기의 제한 또는 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 폐기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재사용, 폐기물의 감소 또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경우, 섬유/의류 제품의 폐기시 매립 또는 소각을 금지하고, 재사용(활용) 또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유도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 of 2024	- 생산자책임조직(PRO)을 통한 이행계획 수립 후 구성원 관리의무 부과 - 주 정부로부터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PRO는 그 구성원인 개별 생산자들이 이행계획을 위반한 사실이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고 - 의류(apparel), 원단(textile), 또는 직물제품(textile articles - bed sheets, curtains, etc.)에 대한 EPR 제도 확대 적용
	일본 (경제 산업성)	섬유어패럴 산업에서의 친환경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정보공개가 기대되는 9가지 항목 중 판매제품의 폐기량이 포함되어 있음

제도 구분	국가	근거 법령	제도 설명
세금 감면	벨기에	2019년 4월 7일 - 빈곤층 대상 비식품 기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7 AVRIL 2019. - Loi modifiant le Code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n vue d'exempter de la T.V.A. les dons de biens non alimentaires aux plus démunis (1))	- 비식품류 생필품을 자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미국	연방법 Americas Act개정 발의안	- Textiles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법인소득세 최대 15%까지 세액공제) 제공
설비 보완시 지원금 제공 등 지원 제도	미국	연방법 Americas Act개정 발의안	- Textiles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와 유럽연합은 법률로써 의류 재고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의류 재고를 시작으로 점차 다른 제조물의 재고까지 폐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법률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사회 또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있고, 그 안에 환경적인 영향이 크고,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한 의류 산업을 시작으로 모든 제조물의 재고 폐기를 금지 하는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2016. 5. 29.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2. 12. 31. 개정되어 순환경제 사회전환촉진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1. 1.시행)(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이 시행 중이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나 특정 행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지는 않다. 환경적 고려없이 재고 폐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막대한 폐기물을 발생시켜 결국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경제사회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것은 즉, 재고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생산 단계부터 엄격하게 판매량을 예측하고 적정량을 생산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도록 법률로서 유도하는 것이다. 패션 산업이 국가의 경제,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에서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률 도입한 것과 같이 우리 순환경제사회법에 원칙적으로 제조물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감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가 도출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재고 폐기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독일의 재고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은 순환경제법에서 제조물의 재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류 기업들은 발생한 재고의 양, 폐기되는 재고의 양, 재고 폐기의 방법 등 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류 재고 폐기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어떤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재고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 기업들이 재고 폐기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벨기에처럼 재고를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또는 호주처럼 민간 기업들이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협회에 국가재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고 발생을 줄이지 않은 채, 재고를 기부하여 감세 혜택만을 악용하거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고민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와 법령들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거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금 시점에서 특정 법률 시행에 따른 효과가 면밀히 분석된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위 국가들의 상황과 민간인식 등이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는 않아, 시행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제도와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외 각국이 시도하는 각종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내에 도입가능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현실을 고려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안을 고민해 볼 시점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가 국내의 효과적인 법률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보고서〉

- 스코틀랜드 의회, 넷제로, 에너지, 교통 위원회, Stage 1 Report on the Circular Economy (Scotland) Bill (2024.02.28.)
- 앨런 맥아더 재단, A new textile economy : Redegning fashion's future (2017)
- 유럽경제위원회(UNECE), Fashion and the SDGs : what role for the UN? (2018)
-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2023 연간보고서 (2023)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비즈니스센터, 스페인 이탈리아 패션시장 동향 보고서(2023.11.14.)
- Circular Communities Scotland, Policy paper for Scotland's circular economy a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2022. 05)
- Circle Economy, Circularity Gap Report Scotland (2022)
- EURATEX, Facts & Key Figures 2024 (2024)
- EUR-Lex, 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EEB), POLICY BRIEF ON Prohibiting the Destruction of Unsold Goods (2021, 09)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EEA), Volumes and destruction of returned and unsold textiles in Europe's circular economy (2024.03)
- Grand View Research, Textile Market Size, Share & Growth Analysis Report, 2024-2030 (2024)
- Holland Circular Hotspot, Circular economy opportunities in Germany (2022)
- Julien Boucher, Damien Friot, IUCN, Primary Microplasticsa Global Evaluation of Sources in the Oceans (2017)
- Mckinsey & Company, Net-Zero Germany (2021)
- Massdep(2024.09), Textiles by the numbers.
- Oxford Economics & Fashion Council Germany, The Status of German Fashion 2021. P6. Executive Summary (2021)

Roberts, H., et al, Product destruction : Exploring unsustainable production-consumption systems and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2023)

Sen. Environmental Quality Comm. Analysis of SB 707 (2023-24 reg. sess.) (2023.03.20.)

Wuppertal Institute, The Circular Economy as a New Narrative for the Textile Industry (2022. 7. 23)

経済産業省製造産業局生活製品課(2024.06), 繊維・アパレル産業における環境配慮情報開示ガイドライン

〈웹사이트〉

국회법률도서관, <https://law.nanet.go.kr>, (2024.07 확인)

스코틀랜드 정부, <https://www.gov.scot/> (2024.10 확인)

유럽연합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2024.10 확인)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conomie.gouv.fr/> (2024.10 확인)

프랑스 생태전환청(Agen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https://www.ademe.fr/> (2024.10 확인)

호주패션협회, <https://ausfashioncouncil.com/> (2024.10 확인)

Circular Economy Hub, <https://cehub.jp/>, (2024.07 확인)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bmz.de/en> (2024.08확인)

Fashionunited, <https://fashionunited.com/> (2024.08 확인)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s://www.ilo.org>, (2024.11확인)

Mango Fashion Group, <https://www.mangofashiongroup.com/en/> (2024.11 확인)

Recycle smart, <https://recyclesmartma.org/beyond-the-bin-search/> (2024. 11 확인)

Seamless, <https://ausfashioncouncil.com/program/seamless/> (2024.11 확인)

Statista, <https://fr.statista.com> (2024.11 확인)

〈언론 기사〉

경향신문,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18일 발효…“재고 관리 체계 재고해야” (2024, 07,11)

그린포스트코리아, '재고 상품' 불태운다? 지구 생각 좀 하세요! (2021.05.21.)

로이터 기사, Spain's top fashion retailers to launch trial to collect clothes waste in 2025 (2024.10.11.)

브룩셀타임즈, 팔리지 않은 비식품 기부는 이제 VAT가 면제됩니다. (2019.03.19)

아주경제, [위기의 K-의류] 의류 소비는 주는데...재고자산은 매년 역대 최대치 (2024.5.23.)

월스트리트저널, The High Price of Fast Fashion (2019. 08. 29.)

유로스탯 뉴스, 우리 옷은 어디에서 오는가 (2021. 4)

패션인사이트, 패션과 럭셔리업계 친환경 전환 너무 더디다 (2023. 11. 6.)

BBC, 버버리,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방, 의류, 향수 불태워 (2018, 09.06)

패션저널 OK fashion, 섬유 패션, 290조 규모 EU 시장 규제 뚫어야 산다. (2022.12.29)

Oxford Economics, The Fashion & Textile Industry's Footprint in the UK (2023.1)

Regarder, The fashion industry is on a watch list (2024, 02, 02)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사)다시입다연구소
전 화 (02) 2038-7949
인 쇄 업 체 (주) 두루행복한세상
전화 1644-0728 (代)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

